

발 간 등 록 번 호

11-1260000-000366-01

AGENCY TO AGENCY ARRANGEMENT

# 알기쉬운 기관간 약정 업무

2007. 10

외교통상부 조약국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발 간 등 록 번 호

11-1260000-000366-01

# 알기쉬운 기관간 약정 업무

2007. 10

외교통상부 조약국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 Contents

## 차례

### ● 서문

### Ⅰ 조약과 기관간 약정 / 1

### Ⅱ 조약이란 무엇인가 / 7

- 8 → 1. 조약이란
- 11 → 2. 조약은 국가를 법적으로 구속하는 유일한 문서
- 13 → 3. 조약 여부의 구별
- 16 → 4. 조약 체결 관련 헌법·법률 규정

### Ⅲ 기관간 약정이란 무엇인가 / 21

- 22 → 1. 기관간 약정이란
- 26 → 2. 기관간 약정의 체결
  - 26 → 가. 내용상 유의사항
  - 30 → 나. 문안 작성시 유의사항
  - 33 → 다. 기관간 약정의 명칭
  - 34 → 라. 양해각서와 의향서
  - 37 → 마. 기관간 약정의 형식과 구성
  - 46 → 바. 기관간 약정에서 사용하는 언어
  - 48 → 사. 기관간 약정 용어

## IV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서 체결 / 51

- 52 → 1. 지방자치단체와 대외 합의서
- 55 → 2.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서 체결시 유의사항

## V 합의서의 서명 / 63

- 64 → 1. 서명 준비 및 절차
- 64 → 가. 서명할 합의문 원본의 준비
- 69 → 나. 서명시 준비사항
- 70 → 다. 서명식장 좌석배치 및 국기배열
- 72 → 라. 서명식 순서
- 74 → 2. 기관간 약정의 서명권자

## 부록 기관간 약정 검토 사례 / 79

- 80 → 1. 사법분야 협력약정안
- 91 → 2. 과학기술분야 이행약정안
- 99 → 3. 보건분야 협력 의향서안
- 103 → 4. 비상관리협력 관련 약정안
- 117 → 5. 투자협력위원회 설치 협정안
- 124 → 6. 산업기술협력 시범기금에 관한 양해각서안
- 135 → 7. 질병관리기구 간 양해각서안
- 142 → 8. 지방자치단체 간 개발 협력 약정안



## »» 서 문

국가 간에 체결되어 법적인 권리·의무 관계를 창출하는 것이 조약이라면 기관간 약정은 우리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소관업무의 범위 내에서 기술적 사항에 대해 외국의 정부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각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다양하고 폭넓은 국제협력활동을 추진해 나가면서 기관간 약정을 체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조약국이 검토한 기관간 약정은 약 70여건이었으나 2005년에는 110여건, 2006년에는 150여건으로 급속히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 외교통상부 조약국에서는 2006년 3월에 “알기 쉬운 조약업무”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국제업무 관련 실무자들의 조약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조약국 직원들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알기 쉬운 기관간 약정 업무”를 발간합니다.

이 책자에는 조약국 직원들이 검토했던 다양한 종류의 기관간 약정 관련 사례를 수록하고 실제 발생하였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가 기관간 약정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의 실무에 널리 활용되어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2007. 10.

외교통상부 조약국장







조약과 기관간 약정

*TREATY AND ARRANGEMENT*



정부와 정부의 각 기관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국 정부 또는 정부 기관과 수많은 협의와 합의를 하며, 그 중 중요한 합의는 문서 형식으로 남겨집니다. 이렇게 문서화된 합의는 크게 법(국제법)의 규율을 받는 것, 즉 법적 효력이 있는 것과 국제법의 규율을 받지 않는 것, 즉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 중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를 통칭 조약이라 부르며, 조약이 아닌 합의문서는 그 명칭 등이 어떠한지와 상관없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조약의 효력에 관해서는, 우리 헌법이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제6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약에 관한 국제규범인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조약을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제2조 제1항 a)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법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정부간 합의문으로서 법적 효력을 갖는



〈2006년 12월에 서울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서명 후 양국 대표가 조약문을 교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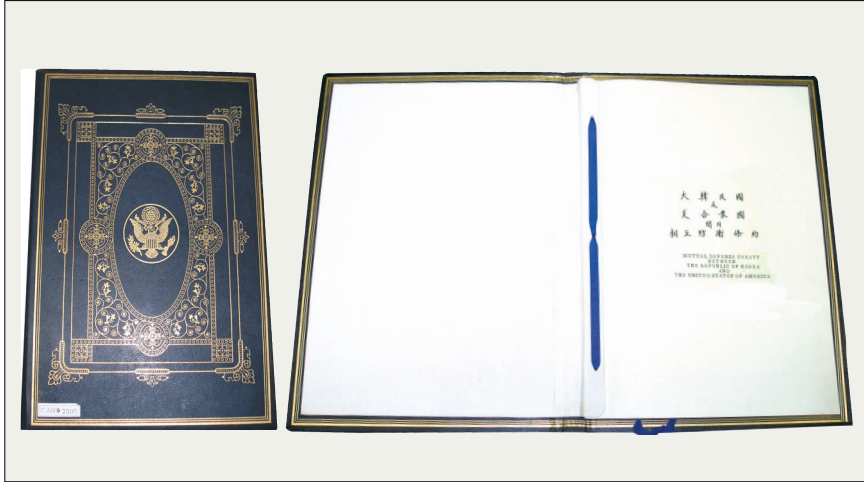
것은 조약뿐이라는 사실의 근거가 되는 규정들입니다.

법률의 규율을 받는 합의 또는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라 함은 합의된 사항이 이행되지 못하거나 위반될 경우 법적 의무가 위반되어 법적 권리의 침해가 있으며,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그 반대로 법률의 규율을 받지 않은 합의는 그러한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또한 절차적으로도 조약은 헌법에 정해진 대로 대통령을 체결권자로 하여 엄격한 절차를 거쳐 체결되는 반면, 그렇지 않은 합의문은 특별한 절차적 요건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조약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며, 조약과 조약이 아닌 합의문을 엄격하게 구별하고 혼동을 방지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조약과 조약이 아닌 합의문 간에는 이렇게 엄격한 구별이 있지만, 문제는 객관적으로 볼 때 조약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문서 자체에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조약 여부의 혼동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국의 조약체결을 위한 국내절차를 떠나서 (왜냐하면 대외적으로는 그러한 절차가 국내적 절차이며, 객관적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합의문서를 체결하는 당사자의 의도가 조약인지 여부를 판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며, 이러한 의도는 합의문의 형식이나 문안을 통해 객관적으로 파악됩니다.

다시 말하면, 문서의 제목, 구성, 특정 용어 등 문서의 곳곳에 조약임을 말해주는 요소들을 찾아서 조약인지 여부를 판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각 기관이 작성하는 합의문에, 그 문서가 조약이 아닐 경우 조약인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요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약이 아님을 분명히 해두어야 헌법을 위반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적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만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문을 부당하게 체결하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1954) 원본의 표지와 제목〉

우리나라의 국력신장으로 정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와 지방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더불어 대외 업무가 확대되고, 이러한 기관들이 합의문을 체결하는 일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 정부 기관에서 외교 통상부 조약국으로 검토를 요청해오는 기관간 약정의 수량이 2~3년 전만 해도 수십 건에 불과하던 것이 최근에는 매년 백여 건 이상에 달하고 있는 것에서도 이러한 추세를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기관간 약정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합의문은 그 자체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나아가 절차적으로 그리고 형식상으로도 조약이 아니어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보다 중요한 또 다른 측면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관간 약정을 체결하는 각 기관이 그러한 합의문의 검토를 조약체결을 다루는 정부기관(외교부)에 의뢰할 필요성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나라를 법적으로 구속하는 조약과 그렇지 않은 기관간 약정을 엄격하게 구별지를 필요성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기관간 약정이 혹시 조약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를 포함하고 있는지 (달리 말하면 기관간 약정이 포함해서는 안되는 문안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가장 잘 만들어진 기관간 약정은 조약이 아님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기관간 약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기관간 약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관간 약정이 어떠한가 한다는 적극적이고 명시적인 규범이 없기 때문에 헌법, 법률 그리고 국제법에 규정된 조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관간 약정이 어떠한가 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안내서는 이러한 취지에서 발간된 것이며, 기관간 약정이 어떻게 조약을 피해가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조약을 피해갈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우선 무엇이 조약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자 하며, 조약을 침해하거나 이에 저촉되지 않는 개념으로 기관간 약정이 어떠한가 하는가를 설명하였으며, 기관간 약정 문안을 어떻게 준비하고 서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 약정 체결 전 과정에서 실무에 이용될 수 있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2006년 3월 30일 서울에서 국무총리 직무대행과 우즈베키스탄 재무부장관이  
우리나라 재정경제부와 우즈베키스탄 재무부간 금융분야 협력 양해각서  
서명 후 악수하고 있다〉



## 조약이란 무엇인가

*TREATY*

1. 조약이란
2. 조약은 국가를 법적으로 구속하는 유일한 문서
3. 조약 여부의 구별
4. 조약 체결 관련 헌법·법률 규정

## 1. 조약이란

■ 조약이란 「국가 간에 서면형식으로 체결되며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합의입니다」

조약에 대해서는 법적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 국내법에 조약에 대한 정의는 없지만, 헌법에 의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약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있으며, 이것이 우리에게 대한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에 대한 조약의 법적 정의라고 하겠습니다.

조약을 규율하는 국제법인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제2조제1항 a호는 “「조약」은 단일의 문서에 또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관련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그 특징의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an international agreement concluded between States in written form and governed by international law, whether embodied in a single instrument or in two or more related instruments and whatever its particular designation)”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약이 되기 위해서는 합의가 ①국가 간에 ②서면형식으로 체결되며 ③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조약은 국가 간의 합의입니다.**

조약은 국가(정부) 간의 합의이므로 정부의 개별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조약의 체결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국가(정부) 이외에는 국제기구가 독

립적인 국제법 주체로서 조약의 체결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기구의 조약체결 관련사항은 「국가와 국제기구 간 또는 국제기구 상호 간의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1986)」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조약은 서면형식에 의한 합의입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1969)」에서 규정(제3조 a호)하고 있듯이 구두합의(oral agreement)도 조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 서면형식에 의하지 아니한 합의는 극히 예외적인 것이므로 조약을 서면형식에 의한 합의로 보는 데에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 조약은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합의입니다.

조약은 국제법의 규율을 받아 법적 권리·의무를 창출하고 규정하는 합의입니다. 국가 간의 서면형식에 의한 합의라도 국제법의 규율을 받지 않는다면, 특정 국내법의 규율을 받는 계약이나 법적구속력이 없는 합의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정치적·도덕적 차원의 합의문서도 조약이 아닙니다(예를 들면 국가 정상 간 공동성명서 등). 이러한 합의문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국제법의 규율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약은 이와 같이 정의되지만 실제로 어떤 합의서가 조약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합의서의 성격은 내용과 형식, 체결당사자의 의도 등을 면밀히 살핀 뒤에 규정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국제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조약이 어떻게 체결·적용·해석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국가들 간 통일된 규칙이 있어야 하겠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1947년에 설립된 유엔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의 조약관계법 성문화작업이 구체화되었고, 그 노력의 결실로 1969년에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이 채택되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조약에 관한 원칙과 규칙을 모두 망라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 조약의 체결절차, 조약의 효력, 조약의 적용·해석·개정·수정·무효·종료 및 정지 등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다른 국가와의 조약 체결 및 이행을 이에 근거하여 행하고 있다.

또한, 국가만이 아니라 국제기구도 독립된 국제법 주체로서 활동하는 오늘날에는 국가와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구 상호 간의 조약체결도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를 규율할 법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1986년에는 「국가와 국제기구 간 또는 국제기구 상호 간의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concluded between Stat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betwee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2007.10. 현재 미발효)」이 체결되었다.

이처럼 오늘날에는 조약법 분야에 있어서 상기 두개의 비엔나협약이 큰 줄기로서 자리잡고 있다.

그런데, 조약에 관한 국제법에서도 법의 공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비엔나협약이 미처 명문으로 규율하지 못한 법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도 있다. 이에 대하여는 비엔나협약 성립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국제관습법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다.

## 2. 조약은 국가를 법적으로 구속하는 유일한 문서

- 조약은 국제법의 규율을 받아 체결당사국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국내적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 조약이행의 법적 의무

조약은 법적 권리·의무를 담은 합의문으로서 국제법의 규율을 받으므로 조약 당사자들은 조약을 성실히 이행해야만 하며(*pacta sunt servanda*), 우리나라 헌법 제6조제1항에도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약의 법적 효력과 같은 이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약과 국내법

조약과 국내법의 관계는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라는 주제 하에 아주 오래전부터 학자들 사이에 주요한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에 대하여는, 조약이 별도의 국내입법조치 없이 이행되는 국가(소위 *monism*)와 국내입법을 통해 조약을 이행하는 국가(소위 *dualism*)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전자에는 프랑스, 독일, 스위스, 우리나라 등이 속하고 후자에는 영국 등 영연방 국가들이 속합니다.

물론, 조약체결의 후속조치로서 국내이행입법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약 자체의 규정이 당사국에게 이행입법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등에는 그러한 입법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헌법 제6조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만일 국내법과 조약의 내용이 충돌할 때에는 “후에 발효한 법률이 우선한다”는 후법 우선의 원칙과 “일반법보다 특별법이 우선한다”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될 것입니다.

### 체결절차에 하자가 있는 조약의 효력

그런데 조약체결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즉 국가가 기속적 동의를 표시하였으나 국내법상의 조약체결 절차를 무시한 경우 조약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조약이 국내 헌법규정(예를 들면, 국무회의 심의, 국회의 동의)을 위반한 경우에는 헌법에 위반한 조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신의·성실에 기하여 체결된 조약을 상대국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무효로 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국제관계의 안정성을 우선시하여 절차위반이 “명백하고 또한 근본적으로 중요한 국내법규정에 관한 것이 아닌 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무효화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6조 제1항). 따라서 조약체결 그리고 이에 대한 배제적(exclusionary) 개념으로서의 기관간 약정 체결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 3. 조약 여부의 구별

-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가간 합의문은 조약으로 체결할 수밖에 없으며, 조약이 아닌 국가간 합의문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약이 그 당사국간에 법적인 권리·의무를 창출하는 합의라면 당사국간에 법적인 권리·의무관계를 창출하지 않는 여러 종류의 문서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모든 형태의 합의문서는 상호간의 신의에 기초한 정책수행상의 합의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합의는 법률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 또는 도의적이며, 이러한 정치적·도의적 합의의 이행은 당사자의 신의(good faith)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조약인지 여부는 합의문 문안에서 표출되는 당사자의 의도(intention)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즉, 국제적으로 합의된 문서에 대하여 당사자가 단순히 정치적·선언적 성격의 것으로 의도한 것인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의도한 것인지를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사자의 의도는 합의문의 특정 문안이나 요소에 의해 표시됩니다.

우선, 문서의 명칭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조약의 명칭에는 조약·협정·협약·헌장·의정서·교환각서·양해각서·약정·합의의사록·최종의정서·일반의정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학자에 따르면 무려 39가지의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명칭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조약의 명칭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각기 어떠한 경우에 사용되는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이 중 일부는 기관간

약정의 제목으로도 사용되고 있으므로 명칭만으로 조약여부를 속단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나아가 합의문의 구성이 조약의 구성을 갖고 있거나(각 조항 표기, 조약 끝부분의 testimonium, “당사국” 표기 등) 법적 권리·의무를 창출하는 용어(이러한 의미에서 “shall”은 절대적으로 중요)를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 합의문이 객관적으로 조약으로 간주될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강제적인 국제사법절차에 의한 분쟁해결규정 포함여부,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규정 포함여부, 유엔에의 등록여부도 조약인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합의문이 조약인지의 여부, 즉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는 체결 당사국간에 사전에 이해를 분명히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조약의 주요 명칭

<p>조 약 (Trea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장 격식을 따지는 것으로 정치적·외교적 기본관계나 지위에 관한 실질적 합의를 기록</li> <li>예) 한·러시아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1993) 한·과테말라 범죄인인도조약(2006)</li> </ul>
<p>규 약(Covenant) 헌 장(Charter) 규 정(Statut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로 국제기구를 구성하거나 특정제도를 규율하는 국제적 합의에 사용</li> <li>예) 국제연맹규약, UN헌장, 국제사법재판소(ICJ)규정 등</li> </ul>
<p>협 정 (Agreeme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정치적인 전문적·기술적인 주제를 다루는 경우</li> <li>예) 한·중국 해상수색구조협정(2007)</li> </ul>
<p>협 약 (Convent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자조약에서 특정분야·기술적 사항에 관한 입법적 성격의 합의에 사용</li> <li>예) 한·요르단 이종과세방지협약(2005)</li> <li>국제기구 주관 하에 개최되는 국제회의 또는 외교회의에서 체결하는 다자조약에 사용</li> <li>예) 담배규제기본협약(2005)</li> </ul>
<p>의정서 (Protoco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본적인 문서에 대한 개정 또는 보충적인 성격을 띠는 조약에 사용</li> <li>예) 한·루마니아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 개정의정서(2005) 1949년 제네바 제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 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1949)</li> </ul>
<p>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약의 서명절차를 체결주체 간의 각서교환으로 간소화함으로써 기술적 성격의 합의에 있어 폭주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사용</li> <li>예) 한·칠레 사증면제 교환각서(2004)</li> </ul>
<p>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미 합의된 사항 또는 조약본문에 사용된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당사자간 외교교섭의 결과 상호 양해된 사항을 확인·기록하는 경우에 사용</li> <li>근래에는 독자적인 전문적·기술적 내용의 합의에도 많이 사용</li> <li>예) WTO DDA 국제신탁기금 출연에 관한 한-WTO 양해각서(2005)</li> <li>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조약보다는 주로 기관간 약정의 명칭으로 사용</li> </ul>

## 4. 조약 체결 관련 헌법·법률 규정

- 조약체결의 과정은 '외교통상부의 조약안 심사의뢰 → 법제처 심사 → 외교통상부의 국무회의 안건상정 →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재가 → 서명(또는 각서교환) → (필요시) 국회동의 → 대통령에 의한 체결·비준 → 공포'로 이루어집니다.

앞서 말했듯이 조약체결을 통해 그 조약에 기속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까지는 우리의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헌법에 규정된 큰 틀 아래 조약체결절차를 규정한 법률로는 「정부조직법」,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과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조약체결·비준권이 있으며(제73조), 조약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제89조제3항), 특정 조약은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고(제60조제1항), 공포되어야 효력을 갖게 됩니다(제6조제1항).

이에 따라 확립된 조약체결을 위한 국내절차는 외교통상부의 조약안 심사의뢰 → 법제처 심사 → 외교통상부의 국무회의 안건 상정 → 차관회의 심의 →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재가 → 서명(또는 각서 교환) → 필요시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 → 대통령에 의한 체결·비준 → 공포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 「대한민국 헌법」상 조약 관련 조문

###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제60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 「정부조직법」상 조약 관련 조문

### 제24조 (법제처)

①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기타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법제처를 둔다.

### 제31조 (외교통상부)

①외교통상부장관은 외교,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국제사정조사 및 이면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상 조약 관련 조문

#### 제6조 (조약)

조약공포문의 전문에는 국회의 동의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뜻을 기재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압날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한다.

###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상 조약 관련 조문

#### 제1조 (목적)

이 법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에 참석하거나 조약에 서명 또는 가서명하는 권한을 가진 자(이하 "정부대표"라 한다)와, 외국에서 행하여지는 주요의식에 참석하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의 입장과 인식을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전하거나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자(이하 "특별사절"이라 한다)의 임명과 권한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부를 대표할 수 있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정부를 대표하여 제1조에 규정된 행위를 할 수 없다.

#### 제3조 (외무부장관)

외무부장관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의 교섭, 국제회의에의 참석, 조약의 서명 또는 가서명에 있어 정부대표가 된다.

**제4조 (재외공관의 장)**

특명전권대사 또는 특명전권공사인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은 신임장을 접수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의 교섭에 있어서 정부대표가 된다.

**제5조 (정부대표 등의 임명)**

① 정부대표는 제3조 및 제4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무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중요사항에 관하여 교섭을 하거나 중요한 국제회의에 참석하거나 중요조약에 서명 또는 가서명을 하는 정부대표의 경우에는 외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특별사절은 외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되는 정부대표에게 발급하는 전권위임장 또는 신임장에는 외무부장관이 서명하며,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되는 정부대표나 특별사절에게 발급하는 전권위임장 또는 신임장에는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외무부장관이 부서하되, 이 경우에도 국제관례에 따라 외무부장관이 서명할 수 있다.

*AGENCY TO  
AGENCY ARRANGEMENT*





## 기관간 약정이란 무엇인가

### *AGENCY TO AGENCY ARRANGEMENT*

1. 기관간 약정이란
2. 기관간 약정의 체결
  - 가. 내용상 유의사항
  - 나. 문안 작성시 유의사항
  - 다. 기관간 약정의 명칭
  - 라. 양해각서와 의향서
  - 마. 기관간 약정의 형식과 구성
  - 바. 기관간 약정에서 사용하는 언어
  - 사. 기관간 약정 용어

## 1. 기관간 약정이란

- 기관간 약정이란 정부기관이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정부기관과 우리 국내법상 자신의 소관업무 내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체결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입니다
- 기관간 약정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이 아니므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 기관간 약정은 당해 기관과 외국의 상대기관 간 비법률적 구속력만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조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조약은 국가와 국가, 국가와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구 상호 간에 체결되는 것인데, 어떤 합의는 체결의 주체가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하나의 정부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체결주체가 “...부”, “...처”, “...청” 등인 경우가 있는데 정부기관이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정부기관과 우리 국내법상 자신의 소관업무 내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체결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를 기관간 약정(agency-to-agency arrangement)이라고 합니다.

우선, 기관간 약정의 법적 효력문제를 살펴 보겠습니다

### 국내적 효력

우리 헌법 제6조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간 약정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이 아니므

로 우리 국내법 체계 내에서 당연히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국제적 효력

기관간 약정은 그 체결주체가 국가(정부)가 아닌 정부내 기관이라는 점에서 “국가간 합의”인 조약과는 구별됩니다. 기관간 약정의 서명도 정부의 전권위임 대표가 아닌 기관 대표가 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관간 약정은 국제법상 법적 효력이 없으며, 법률관계(권리·의무 관계)를 창설하지 못합니다. 결국, 기관간 약정은 당해 기관과 외국의 상대기관 간 비법률적 구속력만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기관간 약정의 효력과 관련하여 체결 상대인 외국의 기관과 의견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체결 전에 해당기관 간에 ①약정이 조약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하고, ②문안에 체결주체를 국가나 정부가 아닌 해당 기관으로 명시하는 한편, ③법적 구속력을 의도하는 용어의 사용을 피하고 ④해당 기관간 약정이 기존 국내법령에 따라 이행된다는 점을 문안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07년 2월 로마에서 우리나라 산업자원부와 이탈리아 경제개발부 간 협력 MOU에 서명하는 모습〉

다음은 기관간 약정의 체결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조약의 체결절차를 살펴보았습니다. 기관간 약정의 체결절차는 조약과는 달리 간결합니다. 기관간 약정은 조약과 같은 체결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각 기관이 독립적으로 교섭하고 조약이 아닌 점을 명확히 하여 문안을 확정·체결하면 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기관간 약정이 외국 정부기관과의 협력사안을 다루는 것인 만큼 정부조직법에 따라 외교와 조약사무 등을 장리하는 외교통상부에 이를 통보하고 사전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그 약정이 고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면 이를 각 기관의 고시로서 관보에 게재하여 국민들에게 이러한 기관간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07년 3월 그리스 아테네에서 우리나라 정보통신부와 그리스 교통통신부 간 IT협력 MOU 체결시 양국 대표가 서명하는 모습〉

## 조약과 기관간 약정 비교표

	조 약	기관간 약정
체결주체	국가(정부)	정부기관
체결추진	관계부처 협의후	외교통상부와 협의후
정책결정	정부가 결정	당해기관이 결정
문안성안 및 교섭	관계부처 협의후 외교통상부가 임명한 정부대표가 교섭	외교통상부와 협의후 당해기관이 교섭
※ 부처(서)간 역할분담	① 외교통상부내 교섭주무부서 ② 관계부처 ③ 조약국(교섭문안 검토)	① 당해 기관 ② 외교통상부내 정책부서 ③ 외교통상부 조약국 (교섭문안 심사)
가서명	정부대표	당해 기관 대표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불요 불요 당해 기관장 재가
서명	정부대표 (전권위임장 필요)	당해 기관 대표
※ 원본 보관처	외교통상부 조약과 → 국가기록원 이관	당해 기관 → 외교통상부 관계국에 사본 송부 필요
비준을 위한 국내절차	헌법 제60조제1항에 해당하는 조약은 국회 비준동의 필요 대통령 비준	불요 불요
비준서 교환	대통령(또는 외교통상부장관) 명의 비준서 교환	불요
관보 게재	조약란에 조약번호를 붙여 “공포”	고시란에 해당기관 고시번호를 붙여 “고시” 필요
효력	국내법과 같은 효력	법적 효력 없음



## 2. 기관간 약정의 체결

### 가. 내용상 유의사항

- 해당 약정의 추진 필요성과 추진 형식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 약정의 체결주체는 해당기관이어야 합니다.
- 국내법령에 저촉되거나 주권을 제약하거나 그 기관의 소관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등의 내용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 추진 여부와 형식

기관간 약정 체결을 추진하기에 앞서 우선 해당 약정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체결 필요성이 확인되면 다음에는 조약으로 추진해야 하는지 기관간 약정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내용에 우리나라 국내법과 상충되거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요소, 또는 그 체결기관의 권한을 벗어나는 요소가 포함된 경우 등에는 이러한 요소를 제외하거나 또는 조약으로 추진해야 하며, 이러한 요소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라도 합의문의 법적 구속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거나 상대국 국내체계상 체결주체를 정부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조약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가 없다면 기관간 약정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 기관간 약정 내용의 한계

기관간 약정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해당기관의 소관업무 범위 내에서

주로 행정적인 또는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협조를 규정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관업무 범위 내의 사항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 일까요?

첫째, 국가 간의 법적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면 한국과 A국 학자교류 약정에서 A국 학자가 한국에 체재하는 동안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약정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특권과 면제는 국가가 부여할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이유에서, 이는 해당 기관의 소관 업무범위를 넘는 것이므로 그러한 내용을 기관간 약정에 담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둘째, 국가차원에서의 재정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사항은 규정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국과 A국간의 학자교류 약정을 예로 들어 설명하여 봅시다. 만약 이 약정에 A국내 한국학연구소 설립비용으로 해당기관이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규정한다면 이는 분명히 국가 차원의 재정부담이 필요한 사항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며, 이러한 문안은 삭제하거나 기 확보된 가용예산의 범위 내로 제한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용어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Over the life of the Pilot Fund, the Parties shall contribute \$250,000 per year for projects to be supported by the Pilot Fund.

⇒ Over the life of the Pilot Fund, ~~(the Parties shall)~~ **each Side will endeavor, subject to the availability of its financial resources, to** contribute \$250,000 per year for projects to be supported by the Pilot Fund.

셋째, 국내의 법령과 저촉되는 내용을 담아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기관간 약정에 각국 정부대표가 참여하는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 설치에 관한 사항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이를 기관간 약정에서 규정한다면 이는 정부대표를 임명할 권한이 없는 기관이 그를 임명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 in accordance with [pursuant to; subject to]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

넷째, 주권의 제약을 가져오는 사항을 담아서는 안됩니다

국가시설 기타 국유재산의 제공, 면세 등 특권·면제를 부여하는 내용은 포함될 수 없습니다.

The Korean Side shall exempt the experts and members of the Delegation from income tax and other charges imposed on or in connection with any emoluments of allowances. (X)

다섯째, 다른 부처의 소관업무까지도 포함하는 내용을 규정해서는 안됩니다.

즉, 기관간 약정을 체결하는 해당기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만을 규정하여야 하며 약정의 이행을 위해 타부처까지도 참여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Ministry of Enviro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inistry of the Environment and Water Resources of .... Regarding Cooperation on CNG Technology and Policies (X)

마지막으로, 입법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국내법 규정과 상이하거나, 국내법상의 규정이 없는 사항, 예를 들면 관세 면제나 경감 등에 관한 내용은 기관간 약정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기관간 약정을 국가 간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또는 국가차원의 재정적 부담사항을 배제하는) 문서로 만들기 위해 약정서 작성시 다음과 같은 문안을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 약정은 국제법상의 어떠한 법적 의무도 창설하지 않는다

(This Arrangement is not intended to create any legal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 이 약정은 양국 각자의 국내법령의 틀 내에서 그리고 양측의 적절한 재정 수준 및 인력의 가용여부에 따라 이행된다.

(This arrangement will be carried out within the framework of the respectiv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two countries and subject to the availability of appropriate funds and personnel of the Sides).

## 나. 문안 작성시 유의사항

- 문안 확정시 양측 문안에 다른 점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우리말 문안은 외국어로 된 문안과 의미가 일치하되 자연스럽게 읽히도록 작성합니다.

### 문안 확정 전에 내용과 형식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기관간 약정이 체결 당사자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 문안 확정 이전에 그 내용과 형식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특히 내용이 우리 헌법 또는 법률과 상충되는지의 여부, 작성 문구·용어·형식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진행한 후 문안을 확정해야 하겠습니까.

### 문안 확정시 체결상대국과 문안이 다르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문안 확정시 우리측이 이해하는 문안과 상대국이 이해하는 문안에 다른 점이 없도록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상대국 측과 만나 한 단어, 한 문장을 꼼꼼히 대조한 후 가서명을 해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 우리말 약정문안은 외국어로 된 문안과 의미가 일치하되 자연스럽게 읽히도록 작성합니다.

우리말 문안은 다수국 정부기관간 약정인 경우에는 번역본(translated text)이 될 것이며, 2개국 정부기관간 약정일 경우에는 정본(valid text)일 때도 있지만 번역본일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말 기관간 약정문안이 당해 약정의 정보일 경우에는 말할 나위도 없지만 번역본일 경우에도 우리 글로 표현된 약정문은 우리말로서의 자연스러움을 유지하면서 외국어로 된 약정문과 대비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뜻에 가감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어로 된 약정문안을 ‘해석’한다든지 ‘직역’한다든지 함으로써 뜻이 안 통하는 우리말 문안을 작성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상 언급한 것을 토대로 우리말로 된 약정문 또는 기타 국제적인 합의문을 작성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외국어로 된 약정문이 담은 뜻을 가감하지 않을 것  
 경우에 따라서는 짧은 표현을 긴 표현으로 또는 그 반대로 하여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 ② 가급적 순수한 우리말로써 자연스러움을 지닌 문장으로 표현할 것  
 경우에 따라서는 수동태를 능동태로, 복수를 단수로 또는 각각 그 반대로 표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 ③ 자연스러운 우리 글인 동시에 법문식 표현을 쓸 것  
 우리 국내 법령에서 쓰는 법조문의 용어를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④ 수식 또는 형용을 위한 구·절의 내용이 긴 경우, 그 수식·형용의 대상이 되는 말과 타요소(같은 문장 내)와의 관계를 분명히 할 것  
 특히, 주어와 동사 사이에 긴 형용사절, 부사절 또는 목적절이 들어가는 경우, 그 주어와 절의 서두 부분이 혼합되거나 절의 후미부분과 동사가 잘

못 연결되어 의미상 혼동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문장의 구성이나 구두점 사용 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⑤ 필요한 경우 ‘의역’을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의역’이라도 할 것 이는, 우리말로써 뜻이 통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합의문으로서의 의사전달(communication) 목적이 근본적으로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 다. 기관간 약정의 명칭

- 기관간 약정의 명칭은 조약의 명칭과 구분하기 위하여 양해각서(MOU), 약정(Arrangement), 계획서(Plan), 프로그램(Programme) 등을 주로 사용합니다.

조약의 명칭으로는 일반적으로 조약(Treaty), 협정(Agreement), 협약(Convention), 의정서(Protocol) 또는 교환각서(Exchange of Notes) 등을 사용합니다.

기관간 약정의 명칭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조약(Treaty), 협정(Agreement), 협약(Convention), 의정서(Protocol) 등의 명칭은 정부가 체결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에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므로 사용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다음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첫째, 모(母)조약을 시행하는 성격의 기관간 약정은 “Arrangement” 또는 “Implementing Arrangement”를 쓰고,

둘째, 모조약의 근거가 없는 기관간 약정에는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Plan”, “Programme” 등을 씁니다.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는 정부가 체결하는 조약에도 사용되는 용어이므로 과거에는 가급적 arrangement 등의 용어를 사용하도록 권장되었으나, 최근에는 기관간 약정의 제목으로 많이 사용되고 조약에서는 그 사용 빈도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 라. 양해각서와 의향서

- 양해각서는 과거 조약의 명칭으로도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주로 기관간 약정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의향서(LOI)는 이후에 체결할 합의서의 예비적 문서로서 기관간 약정에 준하여 작성·서명되어야 합니다.

### 양해각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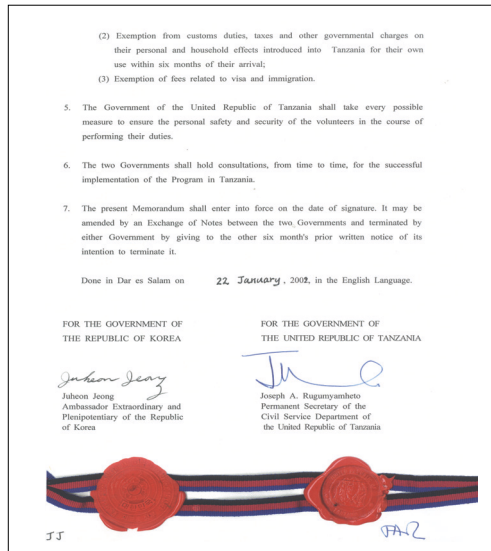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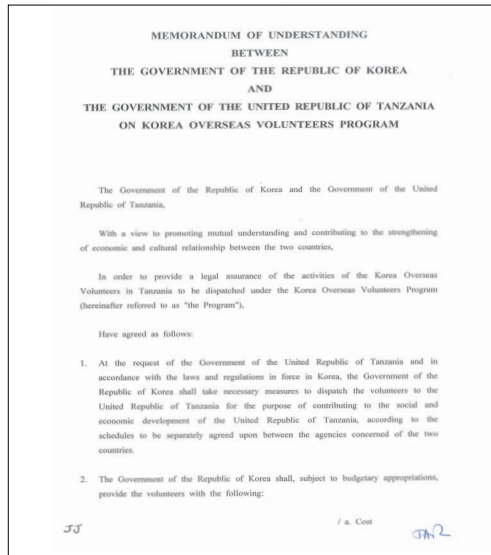
원래 고전적 의미로서의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는, 조약의 일반적 유형이 아니라, 이미 합의된 내용 또는 조약본문에 사용된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쌍방간 외교교섭의 결과 상호 양해된 사항을 확인·기록하는데 주로 이용되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들어 조약이라는 엄격한 명칭 아래 상호 권리·의무 관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신축성 있게 원하는 바를 규정하는 방법으로 양해각서를 많이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양해각서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국가 간에 합의된 일반원칙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양해각서를 국내법(Case Act)에 따라 발효 후 60일 이내에 하원에 통보하고 매년 목록을 발간하는 한편, 통상 UN에 등록하고 있지만, 영국, 캐나다 등은 이를 법적인 문서로 간주하지 않고 다만 정치적·도덕적 선언을 담은 문서로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약의 명칭이 조약성 여부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와 조약을 체결하는 여러 상대국의 관행이 서로 불일치하는 데에서 오는 절차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국가 간 또는 정부 간 명백한 법적 권리·의무에 대한 사항을 조약으로 체결코자 하는 경

우, 양해각서라는 명칭의 사용은 가급적 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신 양해각서는 기관간 약정의 명칭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2년 1월에 체결한 한·탄자니아 봉사단파견 양해각서의 제목란과 서명란〉

## 의향서

의향서(Letter of Intent)는 “A written statement detailing the preliminary understanding of parties who plan to enter into a contract of some other agreement; a noncommittal writing preliminary to a contract.” (Black’s Law Dictionary)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라는 점에서 기관간 약정과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기관간 약정은 정부기관 간에 국내법상 소관업무로 하고 있는 내용에 관하여 행정적, 기술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정치적 약속으로서 그 자체로 완결된 문서인 반면, 의향서(LOI)는 이후에 체결할 합의서의 예비적 문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관간 약정과 마찬가지로 의향서(LOI)도 조약과는 다른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기관간 약정에 준하여 작성·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 마. 기관간 약정의 형식과 구성

- 기관간 약정도 조약과 마찬가지로 제목, 전문, 본문, 최종조항, 서명란으로 구분됩니다.
- 약정의 체결 주체는 제목, 전문, 서명란에서 정부기관 간 합의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조약과 마찬가지로 기관간 약정도 제목, 전문, 본문, 최종조항, 서명란으로 구분됩니다. 이제 기관간 약정의 각 부분 작성시 조약문과 어떻게 차별화되어 작성되는 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 (1) 기관간 약정의 제목

기관간 약정의 제목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첫째, 모(母)조약을 시행하는 성격의 기관간 약정은 “Arrangement” 또는 “Implementing Arrangement”를 쓰고, 둘째, 모조약의 근거가 없는 기관간 약정에는 주로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Plan”, “Programme”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 (2) 체결 주체

기관간 약정의 체결주체는 약정에 규정된 내용을 자신의 독립적 권한으로 이행 가능한 기관이 되어야 하는 바, 정부 간 합의나 국가 간 합의가 아닌 기관 간의 합의임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당해 정부기관이 기관간 약정의 주체가 됩니다. 당해 정부기관의 하부기관 내지 소속기관은 약정에 규정된 내용을 자신의 독립적 권한으로 이행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기관간 약정의 체결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약정의 체결 주체는 제목, 전문, 서명란에서 단일 정부기관 간 합의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예컨대, 국방부가 국내법령에 따라 그 권능의 범위 내에서 X라는 나라와 군사협력에 관한 국방부간 기관간 약정을 체결코자 하는 경우 제목은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inistry of Defense of X”가 될 것입니다.

### (3) 전문 및 본문

기관간 약정 문안은 전체적으로 전문(前文), 본문(本文) 그리고 최종조항(最終條項)으로 구성됩니다.

전문(Introduction, Preamble, Recitals, Whereas Clause)에는 체결주체를 명시하고 약정 체결의 근거, 목적과 체결경위 등을 간략하게 언급합니다. 전문은 약정을 해석하는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본문(Main Parts)은 합의된 약정의 실질적인 내용을 규정합니다. 조문 형식을 취하되 구속적 합의를 나타내는 용어는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즉, 조약의 경우에는 Chapter(장), Part(부), Section(절), Article(조), Paragraph(항), Sub-paragraph(호)의 구조를 갖지만, 약정의 경우에는 바로 Paragraph를 사용하거나 그냥 숫자를 조문 앞에 사용하면서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열거합니다.

### (4) 최종조항

최종조항에는 발효조항(서명 등 조항), 언어조항 및 해석상 이견 발생시 사용언어본 등의 조항을 포함합니다.

조약의 경우에는 본문 말미에 서명권자가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조약에 서명함을 확인하는 인증조항(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s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이 있으나 기관간 약정에는 이러한 인증조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관간 약정의 최종조항은 일반적으로 “Signed in duplicate at (place) on the \_\_\_ day of (month year), in the Korean, (Italian) and the English languages, both (all) texts being equally valid. In case of any divergence in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will be used”로 표기합니다.

### (5) 서명란

기관간 약정의 서명란 역시 단일 정부기관 간 합의임을 명시하여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For the Ministry of \_\_\_\_\_      For the Ministry of \_\_\_\_\_  
of the Republic of Korea      of the Republic of \_\_\_\_\_X

우리나라 조약의 경우는 서명란에 서명자의 성명과 직책을 인쇄하지 않지만 국가에 따라 서명란에 서명자의 성명과 직책을 인쇄하기도 합니다. 기관간 약정 역시 서명자의 성명과 직책을 인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당해 기관의 대표가 서명하지 않고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서명할 경우, 표기되는 서명자는 당해 기관 대표가 아니라 실제 서명자로 인쇄하고 서명 역시 실제 서명자의 이름으로 서명합니다. 또한, 각측의 서명자가 두 명이상이면 경우에는 상급자를 아래쪽에 인쇄합니다. 서명자가 실제 서명하는

위치는 서명란의 기관명칭(~부를 위하여) 아래 입니다.

### 기관간 약정의 문안 형식

제 목 : Arrangement 또는 MOU, Plan, Programme

전 문 : 체결주체, 의의 및 필요성.

본 문 : 구체적 규정(단원형식: 단원 앞에 항목표시 번호 사용)

최종조항 : Signed at \_\_\_\_ on the \_\_ day of (month) (year), in two originals, each in the Korean, \_\_\_\_\_ and the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valid.

서명란 : For the Ministry of ( )	For the Ministry of ( )
of the Republic of Korea	of ( X )
(~ 부(처)를 위하여)	(~ 부(처)를 위하여)
/ 서명 /	/ 서명 /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와 아르메니아 외교부간 협력 약정**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와 아르메니아 외교부(이하 "계약 당사자"로 호칭한다)는,

국제연합 헌장 및 국제연합의 기타 합의 문건에 따라, 양국과 양국 국민간 우호 관계 및 협력을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상호주의와 호혜 원칙에 기초하여 양국 관계를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협력을 추진하고 발전시키기를 희망하며,

또한, 양 계약 당사자간 관심 사항들을 논의하기 위해 다양한 수준에서 대화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 유익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안보협력 과정에서 그리고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의 틀 내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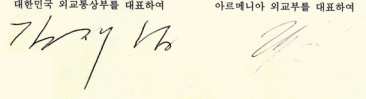
계약 당사자는 양자 관계와 양 계약 당사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국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정책협의회를 가진다. 정책협의회는 서울과 예레반에서 교대로 개최하거나, 국제회의 개최에 개회한다. 대표단의 직급, 의제 및 개최 일자는 외교채널을 통해 공동으로 결정한다.

제 2 항

정책협의회에서는 특히 다음 사항들을 논의한다.

이 약정은 2005 년 11 월 8 일 예레반에서 서명하였으며,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르메니아어, 영어로 각 2부의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대표하여      아르메니아 외교부 대표하여



**ARRANGEMENT ON CONSULTATION  
BETWEE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ARMENIA**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Armen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ides");

Striving to further develop the friendly relations and co-operation existing between the two States and their peoples, in compliance with the spirit of the United Nations Charter and other documents of the United Nations,

Desirous of promoting and developing new forms of co-operation with a view to extending their relations based on the principles of reciprocity and mutual benefit, and

Emphasizing the significance and usefulness of dialogue at different levels with regard to issues of interest to both Sides and the necessity of co-operating actively in the European and Asian security processes and within the framework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meetings,

Have reached the following arrangement:

Paragraph 1

The Sides will hold consultations in order to discuss bilateral relations and

to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ill hold consultations on subjects of interest to both Sides.

Paragraph 5

Any dispute arising out of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Arrangement will be settled through diplomatic channe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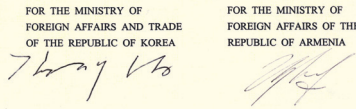
Paragraph 6

The Arrangement will come into effect on the date of signature and will remain in effect for a period of three years. It will be automatically extended for successive three-year periods unless either Side terminates it by way of notification to the other Side three months prior to the expiration of the relevant period.

Signed in duplicate at Yerevan on the 8<sup>th</sup> of November, 2005, in the Korean, Armenian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valid.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will prevail.

FOR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ARMENIA



〈한·아르메니아 외교부간 체결된 기관간약정의 제목란과 서명란(2005. 11)〉



[Sample : 기관간 자원협력약정 문안 구성 예시]

DRAFT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INISTRY OF MINES OF THE △△△  
O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MINERAL RESOURCES

The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inistry of Mines of the △△△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cipants”),

Desiring to establish a joint committee between both Participants to review and facilitate cooperative activities in the field of mineral resources,

Have reached the following understanding:

**1. OBJECTIVE**

The main objective of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is to establish a joint committee composed of representatives of the Participants to identify

and carry out cooperative activitie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 in the field of mineral resources.

## 2. COOPERATIVE ACTIVITIES

Cooperation under this MOU may include the following activities in the field of mineral resources provided that such cooperation comes within the areas of competence of both Participants:

- a) facilitation of consultations between investors of both countries;
- b) exchange of information related to the mineral resources of both countries;
- c) organization of reciprocal visits of experts of both countries;
- d) discussion of ways to promote bilateral trade and investments;
- e) identification of opportunities for cooperation in areas related to geological surveys and mining; and
- f) any other forms of cooperation that may be decided upon by the Participants.

## 3. COMMUNICATION

- (a) Each Participant will designate a technical advisor to

serve as the point-of-contact for the supervision of activities under this MOU.

(b) Electronic means (including the Internet or e-mail), fax, and telephone will be the primary means of communication between the Participants.

#### 4. MEETINGS

(a) Meetings of the joint committee will be held alternately in Korea and in △△△ on mutually agreed dates no less than once every year to review and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this MOU.

(b) .....

#### 5. GENERAL PROVISIONS

(a) The Participants will carry out the activities provided for under this MOU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laws and regulations, and subject to the availability of their appropriated funds and personnel.

(b) No proprietary, classified or restricted information will be exchanged as a result of the activities under this MOU.

(c) Unless otherwise jointly decided upon in writing, all costs

arising from activities under this MOU will be the responsibility of the Participants.

(d) This MOU is not intended to create any legally binding obligations.

## 6. FINAL PROVISIONS

(a) This MOU will come into effect on the date of signature.

(b) This MOU may be amended at any time with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Participants. Any proposal for amendment will be made in writing, three (3) months in advance.

(c) Either Participant may terminate this MOU at any time by giving six (6) months' advance written notification to the other Participant. Such termination will be without prejudice to any ongoing projects and programs.

Signed in duplicate at ○○○, on \_\_\_\_\_ 2007,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Ministry of  
 Mines of  
 the △△△

## 바. 기관간 약정에서 사용하는 언어

- 일반적으로 교섭시 사용된 언어가 정보 작성 언어가 되지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보 언어가 결정됩니다.
- 정보 언어의 숫자에 따라 언어조항은 다양한 형태로 표현됩니다.

### 우리나라의 관례

기관간 약정의 정보가 작성되는 언어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며, 약정문 자체 내에 언어조항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고 또한 바람직합니다. 교섭시 사용된 언어는 일반적으로 정보 작성 언어에 포함되며, 약정 당사국의 국어본이 원칙적으로 정보가 됩니다. 약정 정보 간에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시에는 교섭에 사용된 언어본이 우선한다는 규정을 들 수도 있습니다.

교섭 상대국이 원본의 언어본을 한국어와 불어, 한국어와 아랍어 등 영어를 제외한 양국의 자국어로 작성할 것을 제의하는 경우, 영어본을 정보으로 삼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교섭만큼은 영어본으로 문안에 합의한 후, 그 영어본을 기초로 한국어본과 상대국어본을 작성하는 방법이 바람직합니다

### 언어조항 (Language Clause)의 형태

약정문 본문에서 정보를 규정하는 언어조항의 형태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 단일어 정보 (Single valid text)인 경우

Signed in duplicate in English at Seoul on this seventh day of June of the year two thousand and seven.

- 2개 언어 텍스트가 동등하게 정본(Both texts equally valid)인 경우

Signed in duplicate at Seoul on the Twelfth day of January 2007,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both texts being equally valid.

- 3개 언어 텍스트가 동등하게 정본(All texts equally valid)인 경우

Signed in duplicate at Daejeon on the 23rd day of January 2007, in the Korean, Chinese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valid.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will be used.

- 복수 텍스트 중 일부 언어본만 정본(Dual valid texts)인 경우

Signed at Seoul on November 20th, 2006 in six originals, two each in the Korean, German and English languages, the Korean and the German texts being equally valid. In case of divergent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will be used.

## 사. 기관간 약정의 용어

- 기관간 약정에 사용되는 용어 역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 문안 작성시 문장의 주어와 뜻을 분명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기관간 약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조약의 형식과 구별하기 위하여 본문에 사용되는 용어 역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주의를 요하는 용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조약 용어와 기관간 약정 용어 비교표 참조]

- shall은 구속적 합의를 나타내는 용어이므로, will과 같은 용어를 사용
- agree는 상대방의 권리와 의무를 인정한다는 구속적 합의를 나타내는 용어이므로, 당해 기관의 장의 상호결정의 합치를 의미하는 jointly decide 를 사용
- the Parties는 법적 권리와 의무의 주체라는 의미를 갖는 용어이므로, the Sides 를 사용
- Article은 조약문에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므로, Paragraph 를 사용
- Done은 “Signed, sealed and delivered”의 의미를 포함하는 용어이므로, 서명만으로 절차가 완료되는 Signed 를 사용

이 외에 기관간 약정 또는 합의문을 작성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 주어를 분명히 합니다.

- B may change the venue of the said annual meeting upon consultation with A.
- A and B may change the venue of the said annual meeting upon mutual consultation.

둘째, 뜻을 분명하게 합니다.

- This MOU will remain valid for five years upon signature, and shall be renewed for another five years unless either Side gives the other notice of termination in writing six months prior to its expiration.



### 조약 용어와 기관간 약정 용어 비교표

조 약	기관간 약정
Treaty, Convention, Agreement, Protocol	Memorandum of Understanding, Arrangement
Article	Paragraph
agree	accept, approve, decide, consent
Have agreed as follows	Have reached the following understanding, Have come to the following arrangement
agreement, undertaking	arrangement, understanding
being equally authoritative, authentic	having equal validity, being equally valid
be entitled to	enjoy
bound to be (or by)	covered by
clause	paragraph
commitments	arrangements
conditions	provisions
continue in force	continue to have effect
done	signed
enter into force	come into operation, come into effect, become effective
mutually agreed	jointly decided
obligations	commitments
Parties	Sides, Participants, Signatories
Preamble	Introduction
rights	benefits
have the right	be permitted to
reserves the right	may
shall	will
terms	provisions
undertake	decide, carry out
undertakings	understandings



##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서 체결

### *MEMORANDUM OF UNDERSTANDING*

1. 지방자치단체와 대외 합의서
2.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서 체결시 유의사항

## 1. 지방자치단체와 대외 합의서

-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집권국가인 경우 지방정부의 조약체결권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이나 대외 교류 및 상업적 활동 등 고유의 업무 범위 내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서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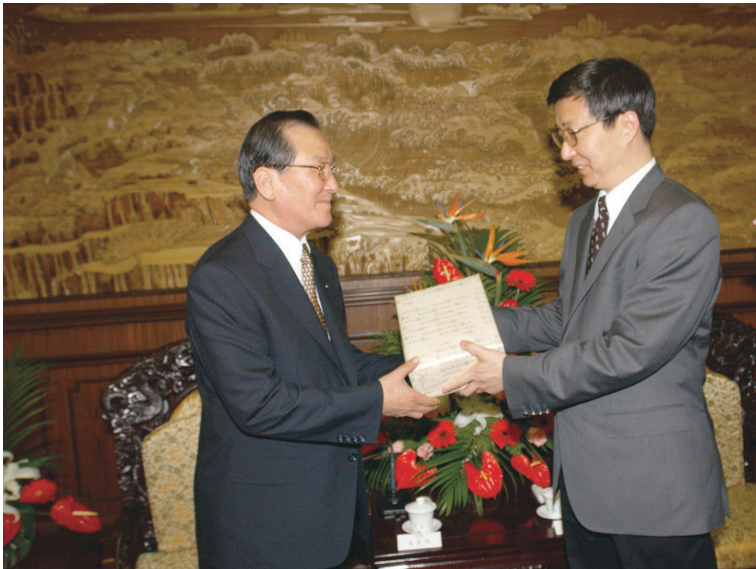
21세기의 국제화·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정부 각 부처(청)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외국기관과 합의문을 체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국제법상 주체는 국가와 국제기구 등에 한정되며, 국가 내의(특히 연방국가의 경우) 주정부 등의 경우에는 해당국 헌법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만 그 체결이 가능합니다(예컨대, 캐나다의 퀘벡주는 1965년 프랑스와, 2004년에는 우리나라와 교육관련 약정을 체결한 바 있음).

특히 지방자치가 고도로 발달한 스위스나 독일의 경우를 보면, 대외관계의 일차적 책임자는 연방정부이나, 주정부는 중앙정부의 사전허가를 받아 인근 외국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연방을 구속하는 조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사항인 경찰, 교육, 문화, 방송, 수자원보호, 환경보호 등에 한정되며 조세 등 연방정부의 권한과 중복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조약을 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집권국가인 경우 지방정부의 조약체결권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우리 헌법은 제117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교, 국방, 사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이나 대외교류 및 상업적 활동 등 고유의 업무 범위 내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서의 체결은 허용된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전라북도와 중국 상해시간 교류 비망록 체결식(2003년 4월)〉

### 예시) 서울시 △△구와 주한미군과의 자매결연 약정서

“서울특별시 △△구와 주한 미8군 사령부는 ...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공헌함을 기본이념으로 삼고자 다음과 같이 자매결연을 체결한다.

1. 서울특별시 △△구와 주한 미8군 사령부는 좋은 이웃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에 걸쳐 친선교류와 협력을 도모한다.

...

3. 양 기관의 장은 정례적인 간담회를 통해 상호교류 방향을 논의하고 발전시켜 나간다.

본 약정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필요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본 약정서는 양 기관의 장이 서명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 위의 약정서의 성격:

- 제목/내용에서 국가나 중앙정부를 구속하는 법적인 권리·의무를 창설하지 않고 있으며,
- 외교(대외교섭, 조약체결 등)에 관한 사안을 다루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의 편의/복지 증진' 및 '체육/문화진흥'(지방자치법 제8조 및 제9조) 등 지방자치단체의 권능에 속하는 사안을 다룬 것으로 판단

## 2.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서 체결시 유의사항

- 조약에 사용되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체결주체로 지방자치단체의 이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우리 헌법에 규정된 업무의 범위 내에서만 대외적 합의서 체결이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를 기속하는 조약을 체결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위임된 범위 또는 고유의 업무범위 내에서 조약의 성격을 띠지 않는 대외적 “합의서”의 체결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서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첫째, 형식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기관간 약정에서 설명하였듯이 합의서는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조약”(Treaty), “협정”(Agreement), “협약”(Convention)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체결주체에 있어서도 “국가”나 “정부” 등의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둘째, 내용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헌법에 규정된 업무의 범위(즉,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처리, 재산을 관리하여 재정을 형성하고 유지할 권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 제정) 내에서만 대외적 합의서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합의서 내에 전체 국민의 권리·의무관계나 재정적 부담을

설정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정부부처의 소관업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현재 10개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강원도,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에 “국제관계자문대사”를 파견하여 국제통상, 자매결연, 주한공관 접촉 등 각 시·도의 국제관계 전반에 걸친 업무를 지원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관계자문대사가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서 체결에는 이들 자문대사들의 업무지원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

[Sample 1. 지방자치단체의 관광협력약정 문안 예시]

DRAFT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 ◇ ◇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Tourist Authority of the Republic of □ □ □  
on Tourism Co-operation

The ◇ ◇ ◇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Tourist Authority of the Republic of □ □ □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ides”),

Wishing to further promote the friendly relations existing between the two countries,

Conscious of the importance of tourism for the development of their economic and cultural relations, as well as the better understanding of the life, history and cultural heritag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 □ □ ,

Referring to the Protocol on Tourism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 □ □ , signed on DDMMYYYY,

Have reached the following understanding:



### Paragraph 1

The Sides will, subject to their respective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strengthen and develop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ourism with a view to promoting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history and culture of their nations.

### Paragraph 2

The Sides will support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co-operation between organizations and entities of the two countries participating in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tourism, and will encourage investments and joint ventures in the field of tourism by these organizations and entities.

### Paragraph 3

The co-oper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2 will take the following forms:

- a) encouraging joint ventures with the aim of providing tourism-related services to tourists from both countries,
- b) exchange of experts in the field of tourism,
- c) exchange of tourism-related information,
- d) assistance in the training of personnel, and
- e) any other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ourism that may be jointly decided upon by the Sides.

#### Paragraph 4

The Sides will encourage the exchange of information in the following areas:

- a) tourism statistics,
- b) educational programmes in tourism-related areas,
- c) promotional materials and activities in the field of tourism,
- d) domestic legislation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tourism resources and cultural heritage, and
- e) domestic legislation related to the regulation of tourism activities.

#### Paragraph 5

The Sides will facilitate the exchange of experts and personnel specializing in the field of tourism as well as co-operation between institutions responsible for conducting research in the field of tourism.

#### Paragraph 6

Each Side will facilitate the establishment in the territory of its country of tourism information centres of the country of the other Side.

Paragraph 7

The Sides will exchange information and share know-how gained as a result of their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tourism organizations.

Paragraph 8

1. This Memorandum will come into effect on the date of signature.
2. This Memorandum will remain in effect for an initial period of five years. It will be automatically extended for successive five-year periods, unless it is terminated by either Side by giving written notice to the other Side at least six months prior to the expiry of the relevant five-year period.

Signed in duplicate at \_\_\_\_\_ on the \_\_\_\_\_ day of \_\_\_\_\_ 2007 in the English language.

For       ◇◇◇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 Tourist Authority  
of the Republic of □□□

[Sample 2. 지방자치단체의 자매결연 약정 문안 예시]

DRAFT

### Sample Sister City Arrangement

The city of \_\_\_\_\_ and the city of \_\_\_\_\_ in a gesture of friendship and goodwill,

Resolved to collaborate for the mutual benefit of their communities by exploring educational, economic and cultural opportunities,

Desiring to support and encourage opportunities for mutually beneficial practical exchanges in the fields of \_\_\_\_\_, (choose those which apply-business, arts and culture, health, science, education, sports, tourism, etc.)

(교류 협력을 하고자 하는 내용)

---

---

---

Hereby proclaim themselves Sister Cities.

Signed in duplicate at \_\_\_\_\_ on the \_\_\_\_\_ day of \_\_\_\_\_ 2007,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both texts being equally valid.

Official

---

Signature and Date

Official

---

Signature and Date



(2006년 8월 강원도와 유엔환경프로그램(UNEP) 에코피서리더십센터간 협력협약식 및 현판식 모습.  
국제기구가 독립적인 국제법 주체로서 조약의 체결 주체가 될 수 있듯이  
기관간 약정의 체결 주체도 될 수 있다)



## 합의서의 서명

### *SIGNATURE*

1. 서명 준비 및 절차
  - 가. 서명할 합의문 원본의 준비
  - 나. 서명시 준비사항
  - 다. 서명식장 좌석배치 및 국기배열
  - 라. 서명식 순서
2. 기관간 약정의 서명권자

## 1. 서명 준비 및 절차

### 가. 서명할 합의문 원본의 준비

- 합의문 인쇄시 Alternation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 서명 전 담당실무자들이 만나 양측 합의문안이 동일하게 작성되었는지 대조·검독 합니다.
- 검독이 끝난 원본은 서명 전에 서명장소와 서명일자를 기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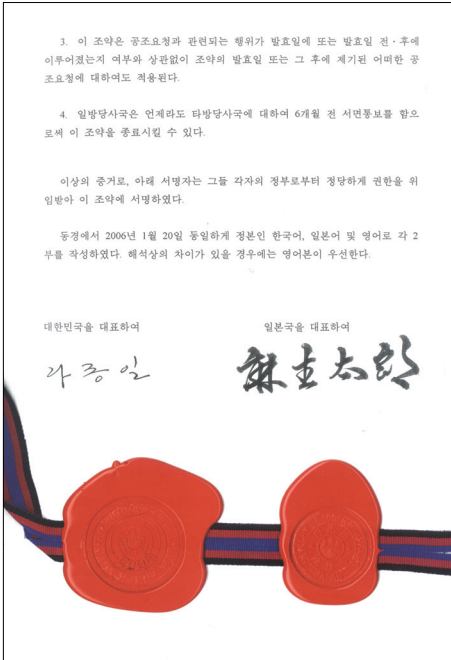
서명식을 거행하기 전에 먼저 서명할 합의문 원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 합의문 원본의 인쇄

조약 원본은 나라별로 소정양식의 조약표지, 원본용지 및 리본을 사용하여 합철해야 하지만, 기관간 약정(또는 합의서)은 정해진 방식이 없습니다.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기관의 로고 등이 새겨진 약정 표지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안 인쇄 시에는 앞에서 말한 바 있는 국명 및 기관명의 교차표기(Alternation)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즉, 우리측이 보관할 합의문 원본에는 약정의 제목, 전문, 본문에 있어 우리나라의 국명 또는 기관명이 앞에 표기되도록 하고, 또한 서명란에도 우리나라의 국명 또는 기관명이 좌측에 표기되도록 하며, 언어규정에서도 한국어가 상대국의 언어보다 앞서야 합니다.

같은 원칙에 의하여 상대측이 보관할 합의문 원본에는 상대국의 국명 또는 기관명이 우선하도록(좌측에 표기되도록) 인쇄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형사사법공동조약 서명란으로서, 우리나라 국명이 우선하여 좌측에 인쇄되었고, 소정 양식의 리본으로 합철하여 Wax & Seal 방식으로 봉인하였다. 조약 원본은 나라별로 소정 양식의 조약표지, 용지 및 리본을 사용하여 합철해야 하지만 기관간 약정에는 정해진 합철 규정이 없다〉

## 교차표기 원칙의 적용

합의문 문안을 작성하여 인쇄할 때에는 Principle of Alternation을 적용한다. 즉, 우리측 보관분에는 제목과 내용에서 우리나라명을 먼저 표기하며, 상대국측 보관분에는 상대국명을 먼저 표기한다

### 〈우리측 보관분〉

Arrangement (또는 MOU) between (the Ministry of ... )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inistry of ... ) of ...

### 〈상대측 보관분〉

Arrangement (또는 MOU) between (the Ministry of ... ) of ... and (the Ministry of ...) of the Republic of Korea ...



**Joint Declaration on the Promotion of Tripartite Cooperation among the Republic of Korea,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Japan**  
Bali, Indonesia, October 7th, 2003

WE, the heads of State/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Japan met during the ASEAN+3 Summit held in Bali, Indonesia on October 7th, 2003. We reviewed and acknowledged the positive progress in the development of our bilateral relationships and trilateral cooperation. For the further promotion and strengthening of our tripartite cooperation in the new century, we hereby issue a joint declaration as follows:

I

With geographical proximity, economic complementarity, growing economic cooperation and increasing people-to-people exchanges, the three countries have become important economic and trade partners to one another, and have continuously strengthened their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in regional and international affairs.

The cooperation among the three countries demonstrates the gratifying momentum for the development of their relations. Their leaders have held regular informal meetings since 1999. Their departments of various areas have established mechanisms for meetings at the ministerial, senior official and working levels. The three countries have developed fruitful and effective cooperation in priority areas such as economy and trade, information, environmental protecti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culture.

〈2003년 10월 ASEAN+3 정상회의시 한·중·일 정상 공동성명서의 우리나라 보관본 첫 장 모습. 국가명이 알파벳 순서에 따라 한국(Korea), 중국(China), 일본(Japan)의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3개국 이상이 서명할 경우 우리나라 보관본은 우리나라 국명이 먼저 표기되고 다음 두 나라는 알파벳 순으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Korea), 일본(Japan), 프랑스(France) 간의 합의문이라면 우리나라 보관본은 “대한민국 ○○○부와 프랑스공화국 ○○○부와 일본국 ○○○부 간의 △△△에 관한 약정”, 일본측 보관본은 “일본국 ○○○부와 프랑스공화국 ○○○부와 대한민국 ○○○부 간의 약정”, 프랑스측 보관본은 “프랑스공화국 ○○○부와 일본국 ○○○부와 대한민국 ○○○부 간의 약정”으로 표기되는 것입니다.

원본이 하나의 언어(주로 영어)로 작성될 때는 각자 자국의 보관본을 인쇄하면 됩니다. 그러나 원본이 한국어와 상대국어의 2개 언어(예를 들면, 한국어와 아랍어)로 작성될 경우, 우리측 보관본의 한국어는 우리가 인쇄

하지만 상대국어(아랍어)의 경우는 대개 상대국에서 우리측 보관용 상대국어본(아랍어본)을 인쇄합니다. 상대국 언어가 영어라면, 우리측 보관본을 모두 자체적으로 인쇄할 수 있으나 그 외의 언어본은 국내에서 인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기관간 약정의 경우, 기관 로고 등이 새겨진 특정한 용지를 사용한다면, 인쇄하기 전에 우리측 용지를 상대국에 보내어 우리측 보관용 상대국어본을 인쇄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상대국 보관용 한국어본은 상대국의 소정 용지를 받아 우리측에서 인쇄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이 경우 교차표기(Alternation)의 원칙을 고려하여 체결주체의 표기순서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본의 언어를 한국어, 영어, 아랍어의 3개 언어로 작성할 경우 우리측 보관용 한국어본 및 영어본은 우리가 인쇄하고, 아랍어본은 우리측 용지에 상대국이 인쇄토록 하며, 상대국 보관용 한국어본은 상대국 용지에 우리측이 인쇄하여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영어본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각 국이 자국 보관본을 자체적으로 인쇄합니다.

### 문안 검독 및 합철

서명예정인 합의문은 우리측 영어본과 상대국측 영어본을 가지고 사전에 대조 검독(proof-reading)해야 합니다. 문안 검독은 정식으로 서명하기 전에 담당 실무자들이 만나 양측 문안이 동일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양측이 자국 보관용 상대국어본을 교차 인쇄했다면 문안 검독시 서로 자국 보관용 합의문 원문을 교환하고, 검독이 완료된 후 합의문을 합철(binding)하게 됩니다. 합철시 우리측이 보관할 원본은 한국어본, 상대국어본, 제3국어본(영어본일 경우가 많음)의 순서로 합철합니다. 교차표기

원칙에 따라 상대국은 상대국어본, 한국어본, 제3국어본의 순서로 합철합니다.

### 서명장소 및 일자 기록

문안 검독과 합철이 완료되면 서명 직전에 합의문의 최종조항에 최종 확정된 서명장소와 서명날자를 검은 색 펜글씨로 기입합니다. 이때, 영문본의 서명일자는 보통 서수로 표기합니다(예를 들어, 2일에 서명할 경우 2nd day 또는 Second day 로 표기).

## 나. 서명시 준비사항

기관간 약정 서명시 준비해야 할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테이블
- 서명자 착석용 의자 [2개]
- 두 나라의 국기 (및 명패)
- 서명을 위한 필기도구(만년필) 및 받침 [각2개]
- 압지(Blotter) [2개]

서명시 기본 준비물 외에 경우에 따라서는 꽃장식이나 서명 후 축배에 사용될 샴페인 등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서명식을 진행할 경우에는 앞에서 바라볼 때 오른쪽에 우리나라 서명권자가, 왼쪽에 상대국 서명권자가 위치한다〉

## 다. 서명식장 좌석배치 및 국기배열

- 우리나라에서 서명할 경우 우리측 서명자가 내빈을 향하여 왼쪽에,
- 상대국 서명자가 내빈을 향하여 오른쪽에 위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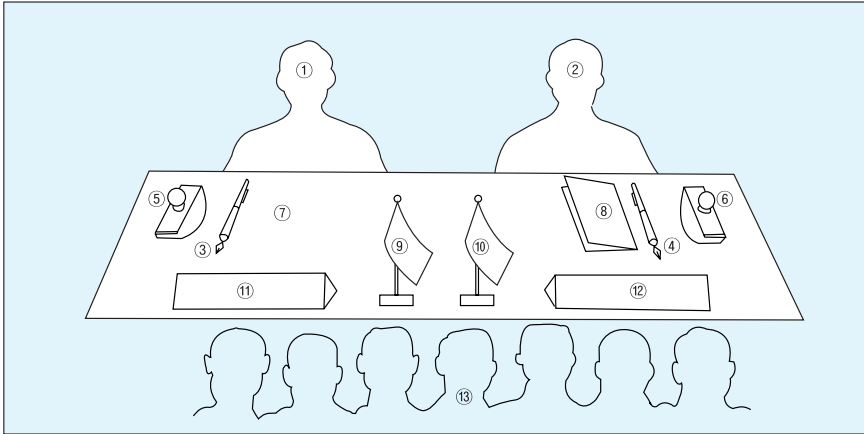
서명은 양측이 합의하는 장소(주로 교섭이 진행된 국가)에서 행하여집니다.

조약 서명을 위한 좌석배치 및 국기 배열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서명할 경우 서명식장에서는 우리측 서명자가 내빈을 향하여 왼쪽에, 상대국 서명자가 오른쪽에 위치하며 양측 서명보좌관이 각각 서명자의 옆에서 서명을 보좌합니다. 상대국에서 서명 시에는 반대로 우리측 서명자가 내빈을 향하여 오른쪽에, 상대국 서명자가 왼쪽에 위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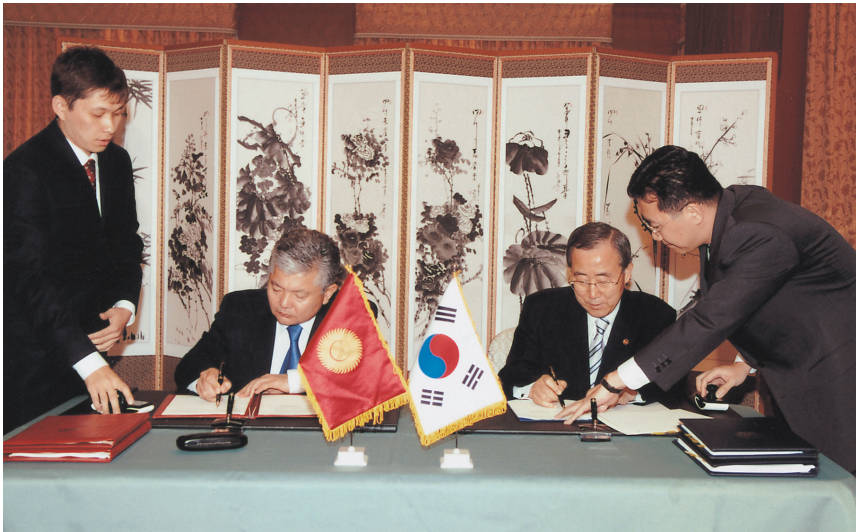
이때 서명 보좌관은 서명권자 뒤편의 바깥쪽에 서 있다가 서명식이 시작되면 서명권자의 옆에 서서 약정문의 서명란을 펼치고 서명권자가 서명하기 편리하도록 보좌합니다. 그러므로, 서명보좌관은 서명권자가 서명할 서명란의 위치가 어느 곳인지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서 약정문의 서명할 위치에 미리 접착식 메모지 등으로 표시를 해두면 편리하게 서명을 보좌할 수 있습니다.

서명식장에는 국기와 명패 등을 바르게 배치하고,[그림 참조] 서명식에는 관계있는 직원 등이 배석하며, 또한 홍보에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취하기도 합니다.



- ① 상대국 서명권자
- ② 한국의 서명권자
- ③④ 만년필
- ⑤⑥ 압지
- ⑦⑧ 약정문

- ⑨ 상대국 국기
- ⑩ 한국 국기
- ⑪ 상대국 국명 명패
- ⑫ 한국 국명 명패
- ⑬ 신문·TV 등 언론관계자



〈2006년 7월의 한·키르기즈 관광협정 서명식 모습. 우리나라(서울)에서 진행되었으므로 우리측 서명자가 내빈을 향하여 왼쪽에 위치하고 있다〉

## 라. 서명식 순서

기관간 약정의 서명식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서명식장을 준비합니다.

각 서명권자 위치의 탁자 위에 자국 보관용 합의문 원본을 놓습니다.

둘째, 양측 서명권자가 입장합니다.

이때 서명보좌관은 각각 서명권자 약간 뒤편 바깥쪽에 위치합니다.

셋째, 양국 서명권자는 서명보좌관의 도움을 받아 각각 자국 보관용 합의문 정보상의 서명란(왼쪽)에 서명합니다.

아랍어, 히브리어 등과 같이 Text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씌어지는 문안의 경우에는 반대로 오른쪽에 우리측 서명란이 위치합니다.

각측 서명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하급자가 먼저 서명한 후 상급자가 서명합니다.

넷째, 서명보좌관은 서명된 양측의 합의문을 서명자의 뒤쪽에서 교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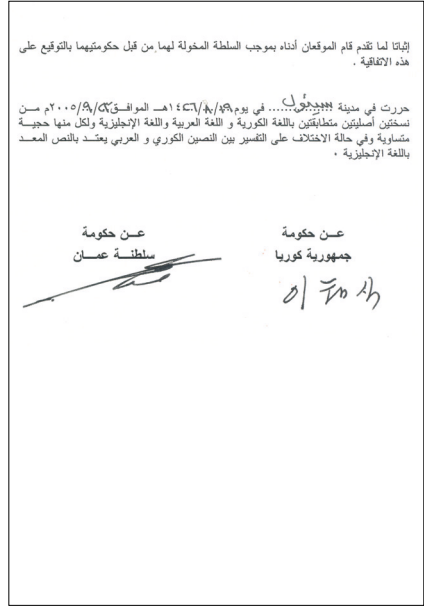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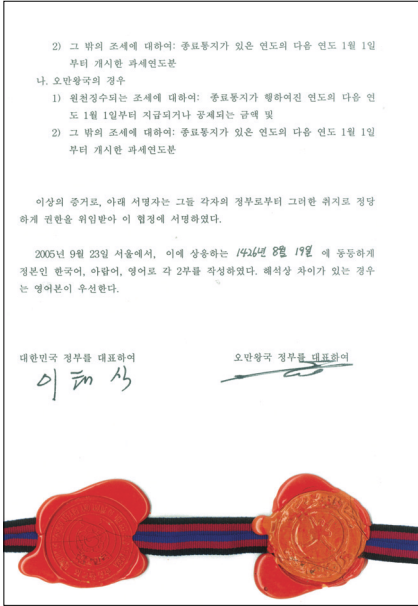
다섯째, 서명권자는 상대국 보관용 합의문 서명란(오른쪽)에 서명합니다.

아랍어, 히브리어본 등은 왼쪽에 서명란이 위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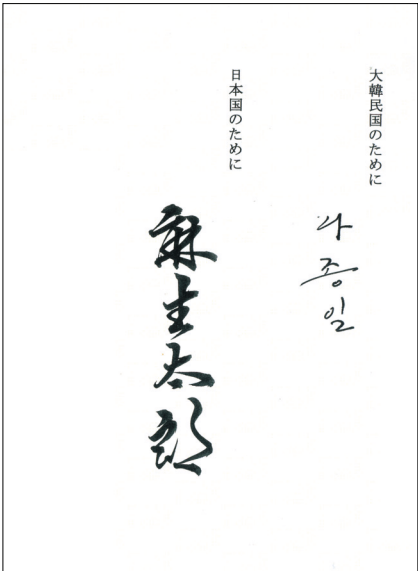
여섯째, 서명이 끝나면 양측 서명권자는 합의문을 교환합니다.

합의문 교환이 끝나면 서명권자들은 악수를 하고, 배석자들은 박수를 치며 사진촬영 등을 합니다.

\* 경우에 따라서는 서명 후 축배(삼폐인)를 들기도 합니다.



〈한·오만 이종과세방지협약 한글본과 아랍어본의 서명란. 우리나라 보관용 아랍어본의 서명란은 한글본과 반대로 오른쪽에 우리나라 대표의 서명란이 위치하고 있다〉



〈세로쓰기로 작성된 일본어본의 경우에도 우리 측 서명란은 오른쪽에 위치한다. 왼쪽 사진은 한·일 형사사법공조조약의 일본어본 서명란〉



## 2. 기관간 약정의 서명권자

- 기관간 약정의 서명은 해당기관의 장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상대국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대사가 정부부처를 대신하여 기관간 약정에 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기관간 약정의 서명은 해당기관의 장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기관의 장이 사정상 직접 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의 위임을 받은 해당 기관의 고위직 인사가 서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기관간 약정의 서명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것은 상대국에 주재하는 우리 대사가 기관간 약정에 서명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명전권대사는 우리나라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수여한 신임장을 주재국 국가 원수에게 제출하고 국가를 대표하여 활동하는 외교사절로서, 조약 체결권자의 위임을 받아 국가·정부를 대표하여 “조약”에의 서명은 할 수 있으나, 정부의 특정 부처를 대신하여 기관간 약정에 서명하는 것은 적절한 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약정을 조속히 체결할 필요성이 있는데 양국 관계부처 간의 방문계획이 없어서 체결이 지연되고 있고 이로 인해 양국 관계부처 간 불편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우편으로 서명문서를 교환하거나 외교통상부 재외공관을 통하여 서명문서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그 체결을 행할 수 있습니다.

간혹, 정상 방문행사 계기에 양국 정상의 임석 하에 기관간 약정만을 서명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기관간 약정이 양국 간의 조약

이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줄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해당기관의 장이 사정상 직접 서명할 수 없어서 그의 위임을 받은 고위직 인사가 서명을 대신 하는 경우, 정부 기관장 명의의 전권위임장을 만들어 제출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권위임장(full powers)이란 권한 있는 국가기관이 조약문안의 교섭·채택이나 인증을 위하여 또는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표시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국가를 대표하도록 임명하는 문서를 뜻합니다. [외교통상부 발행 “알기쉬운 조약 업무” (2006. 3.) 참조] 그러므로, 기관간 약정을 서명하는데 전권위임장을 제출하는 것은 적절한 행위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상대국에서 굳이 서명 위임에 대한 인증 문건의 제출을 요구한다면, 전권위임장(Full Powers)이 아니라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제출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임장의 양식은 전권위임장의 양식에서 법적 구속력을 의미하는 용어를 배제하고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예문 참조]

## 위 임 장

본인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 ◇◇◇은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차관 ○○○ 씨에게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를 대표하여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와 △△△국 [외교부] 간의 □ □ □ 분야 협력에 관한 약정에 서명할 권한을 부여 하였다.

2007년 8월 17일, 서울

[외 교통 상 부] 장 관

/서명/ ◇ ◇ ◇

(Translation)

## POWER of ATTORNEY

I, ◇◇◇,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f the Republic of Korea, do hereby certify that Mr. ○○  
○, Acting Minister of the [Foreign Affairs and Trade] of the Republic of Korea, is vested with power and authority to sign, on behalf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Arrangement betwee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 concerning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 □ □ .

Seoul, 17 August 2007

/Sgd./ ◇ ◇ ◇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2007년 2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패션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와 밀라노시 간의 교류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있다.〉



## 기관간 약정 검토 사례

### *APPENDIX*

1. 사법분야 협력약정안
2. 과학기술분야 이행약정안
3. 보건분야 협력 의향서안
4. 비상관리협력 관련 약정안
5. 투자협력위원회 설치 협정안
6. 산업기술협력 시범기금에 관한 양해각서안
7. 질병관리기구 간 양해각서안
8. 지방자치단체 간 개발협력 약정안

## 1. 사법분야 협력약정안

- 본 약정은 특정사건 관련 구체적인 형사사법공조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4항-제10항), 이는 우리나라 국내법인 국제형사사법공조법 및 해당국과 체결된 형사사법공조조약에 의거하여 이행되어야 하는 국가간 법적 권리·의무 사항이므로 포함 불가
- 상기 사항 삭제와 더불어, 양 기관이 각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소관업무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한 협력 사항을 포함하는 법적 구속력 없는 기관간 약정으로 문안수정
- 첨부 : 검토 수정안

Draft

### AGREEMENT<sup>1</sup>

#### On Co-operation between △ △ △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 △ △ of the A-LAND

The Office the △△△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 of the A-LA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Sides”),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strengthening and further developing the mutual co-operation of both between the two

- 
1. ‘협정(Agreement)’은 국가간 또는 정부간 조약을 지칭하며, 기관간 약정의 명칭으로는 ‘약정(Arrangement)’,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등을 사용

~~States~~ countries in the sphere ~~{OR area(s)}~~ of fighting  
combating crime and protecting human rights ~~and freedoms~~ [?],

Considering the need to ensure that such co-operation is  
carried out in the most effective way,

Based on the principles of equality, ~~mutual respect of State~~  
~~sovereignty~~sovereign equality and generally recognized rules of  
international law aimed at securing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reedoms~~,

Have ~~agreed as follows~~reached the following understanding:

#### ~~Article Paragraph 1~~

1. The Parties ~~shall promote~~Co-operation in accordance with  
under this ~~Agreement~~ Arrangement ~~within~~ will be subject to  
the limits of their competence and in compliance with the  
legislation and international obligations of ~~their State~~the  
Sides.

2. While co-operating ~~within the framework of~~under this  
~~Agreement~~Arrangement, the Parties ~~shall~~Sides will ~~to~~ seek to  
achieve practical results in combating crime and; protecting  
human rights ~~and freedoms~~, and ~~shall~~will interact in the spirit  
of partnership and mutual benefit.



## ~~Article Paragraph 2~~

1. 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Arrangement, the ~~Parties~~Sides will co-operate in the following ways:

- (a) —~~(a) exchange of inge-~~of professional experience and information relating to the activities of the ~~Partie~~Sides, including trends in crime ~~prevention[?]~~ and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reedoms~~;
- (b) —~~(b) co-operatione in the execution~~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treaties on legal assistance and enhancement of~~ing ofe~~ legal relations in criminal matters, in particular through consultations on legal affairs ~~while preparing and considering particular requests~~;
- (c) —~~(e) sharing ofe~~ information sharing on current and former legislations, and law-making and law enforcement activities, including the exchange of legislative and other statutory legal acts;
- (d) —~~(d) sharsharing ofe~~ experience sharing in combating crime, in particular organized crime, terrorism, corruption, arms trafficking, trafficking in ~~{people,?}~~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economic crime, hi-tech crime and other types of crime that pose a grave threat to ~~the~~ society;
- (e) —~~(e) conducting ofhold joint seientifie~~ research on vital issues of common interest, and ~~the holding of~~ joint workshops, expert meetings, and ~~seientifie~~ theoretical~~[?]~~ and practical events on topical issues relating to the

- activities of the prosecution authorities;
- (f) ~~(f) arranging of~~ expert visits between representatives of the ~~prosecution authorities~~Sides to examine and share professional experience ~~between the prosecution authorities~~;
- (g) ~~(g) co-operation~~ in the sphere of training and ~~advance training~~ of prosecution officers; and
- (h) ~~(i) any other forms of co-operation that may be agreed~~decided upon by the ~~Partie~~Sides. [*? similar to Article 2*].

2. This Agreement ~~Arrangement~~ ~~shall~~ will not prevent the ~~Parties~~ Sides from defining and developing any other mutually acceptable directions and forms of co-operation in compli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provisions stipulated by ~~set~~ out in Article Paragraph 1 of this Agreement~~Arrangement~~.

### ~~Article Paragraph 3~~

The ~~Parties~~ ~~shall~~Sides will co-operate [*, if necessary,*] in particular on the basis of ~~mutually agreed~~jointly decided co-operation programmes established for a specific period. [*this one is a little strange — the Agreement is all about cooperation, so it's odd to say 'shall co-operate, if necessary'*]

- 이하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는 우리나라 「국제형사사법공조법」 및 「한·A-LAND 형사사법공조조약」에 의거하여 이행되어야 하는 국가간 법적 권리·의무사항이므로 삭제

~~Article Paragraph 4~~

- ~~1. Within the framework of this Agreement, the Parties shall include through diplomatic channels or other forms of communication, to discuss co-operation under this Agreement.~~
- ~~2. Within the framework of this Agreement, the following departments shall coordinate the co-operative events activities of the Parties under this Agreement:  
(a) for From the A-LAND Party side the Main Department for △△△  
(b) for From the Korean Party side - △△△ \_\_\_\_\_~~

~~Article Paragraph 5~~

- ~~1. [Within the framework of this Agreement, -delete?] The Parties shall cooperate on the basis of requests for information and assistance [under this Agreement]. The information or suggestions to carry out certain activities may be transmitted to the other Party Side without a request, if there are grounds to believe that they may appear to be of interest to that PartySide. \_\_\_\_\_~~
- ~~2. Requests shall will be sent in written form, but in case of urgency they may be stated orally, provided that they would be obligatorilyarefurther confirmed in writing within three~~

~~—days, including with the use of technological means of text transmission, such as fax or email[?].~~

#### ~~—Article Paragraph 6—~~

- ~~1. A request shall will contain:—~~
  - ~~—(a) names of a the Requesting Authority and Requested Authority;—~~
  - ~~—(b) summary of the merits of a the case;—~~
  - ~~—(c) purpose and arguments in support of a the request;—~~
  - ~~—(d) description of requested assistance to be rendered; and—~~
  - ~~—(e) any other information that may be useful to appropriately effectively execute a the request.—~~
  
- ~~2. The request for assistance, whether transmitted or confirmed in writing, shall will be signed by a the Head of the Requesting Authority or his/her Deputy.—~~

#### ~~—Article Paragraph 7—~~

- ~~1. The Requested Party shallSide will consider a request within the shortest possible time. If necessary, the Requested Party Side may apply to the Requesting Party Side for additional information. The Requesting Party shallSide will be immediately notified of any circumstances, preventing or significantly delaying from the execution ofg therequest or significantly delaying its execution request.—~~

- ~~2. If the Requested Party Side believes that immediate execution of the request may interfere with the proceedings pending or underway in its State, then it may postpone the execution of the request or connect its execution with the adherence to necessary execute it in accordance with certain terms and conditions defined upon agreeddecided upon through the conduct of consultations with the Requesting PartySide. If the Requesting Party Side agrees accept to be renderedreceiveassistance under the suggested agreeddecided conditions, it shall will ensure such conditions are met.~~
- ~~3. If the Requested Party Side is not competent in the execution of qto execute arequest, it shall will promptly so notify the Requesting PartySide of that, and, upon its the request of the Requesting PartySide, it shallwill then transmit the request to a competent authority in its State.~~
- ~~4. With a request being under consideration, tThe Requested Party shallSide willact on [OR execute] a request in accordance with the basis of its national legislation.~~
- ~~5. The Requested Party shallSide will promptly inform the Requesting Party Side of the results of the execution of the request.~~

~~Article Paragraph 8~~

- ~~1. The execution of a request shall may[?] be denied entirely on or in part, if the Requesting Party Side has grounds to believe that its execution may cause harm to the sovereignty, security or other significant interests of its State, or contradicts its legislation or international obligations.—~~
- ~~2. In case there is no possibility to satisfy a request entirely or in part, the Requested Party Side shall promptly so notify the Requesting PartySide, of that indicating the reasons of for its rejection.—~~

~~Article Paragraph 9~~

~~—Within the framework of this Agreement, rRequests under this Agreerrangement and any documents attached to it them shall will be drawn up in the official language of State of the Requesting PartySide,'s State with translation into the official language of the State of the Requested PartySide's State, or into the English language.—~~

~~Article Paragraph 10~~

- ~~1. The Parties Sides shall will take relevant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e confidentiality of requests,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received from the other PartySide.—~~

~~2. The Parties Each Party shall Side will secure the level of confidentiality as requested by the other Party Side in compliance with their its national legislation.~~

~~3. The information and documents received from the Requested Party Side may be used for the purposes other than those stated in the request only by with the previous [written?] consent of the Requested Party Side.~~

#### ~~Article Paragraph 11 4~~

~~The Parties Each Party shall Side will bear their its own expenses relating to co-operation on the basis of under this Agreement Arrangement arising in the territory of its State, unless otherwise jointly agreed decided upon by the Sides in each particular case.~~

#### ~~Article Paragraph 12 5~~

~~The Parties Sides shall will solve any issues arising from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Arrangement through consultations and negotiations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 of mutual respect and understanding.~~

#### ~~Article Paragraph 13 6~~

~~The Parties Sides, by with mutual agreement consent, shall~~

may make amendments and additions in to this Agreement—  
Arrangement by signing relevant ~~protoc~~supplementary  
arrangements.

#### ~~Article Paragraph 14~~

~~This Agreement Arrangement shall will not affect the rights  
and obligations arising from other international treaties with  
to which the A-LAND and the Republic of Korea being the  
Parties to are party<sup>2</sup>~~

#### Article Paragraph 15-7

1. This Agreement shall Arrangement will be concluded for an  
uncertain term indefinite period and shall enter into force come  
into effect upon the date of its signature.

2. This Agreement Arrangement shall cease to be in force will  
remain in effect for an indefinite period unless either Side  
notifies the other in writing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it 60  
days in advance. ~~60 days after the date of the receipt of a  
written notice sent by either Party to the other stating its  
intention to denounce terminate it the Agreement.~~

---

2. Paragraph 1.1 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삭제 .



~~Done~~ Signed at \_\_\_\_\_ on this \_\_\_\_\_ day of \_\_\_\_\_, 2007, in duplicate, ~~both~~ in the Korean, A-LAND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valid.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will prevail.

For the △△△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 of the A-LAND

~~For the △△△ of the A-LAND~~      ~~For the △△△ of the Republic of Korea~~

## 2. 과학기술분야 이행약정안

- 기관간 약정에는 국가 차원에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내용을 규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기관의 기승인된 예산의 범위를 넘는 지출이 필요한 사항은 기관간 약정으로 규정할 수 없음.
- 또한 기관간 약정에는 국내 법령과 저촉되는 사항을 규정할 수 없고, 해당기관은 정부대표 임명 권한이 없으므로, joint meeting이 규정될 경우 이 meeting의 참여자는 정부대표가 아닌 해당기관의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는 것임.
  - organization within their countries는 each of their organization으로 수정.
- 기관간 약정에는 다른 부처의 소관업무를 포함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없는바, 약정에 규정된 내용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처의 협조를 요할 경우, 기관간 약정이 아닌 조약으로 체결되어야 함.
- 첨부: 검토 수정안

Draft

**IMPLEMENTING ARRANGEMENT  
BETWEEN  
THE △ △ △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 △ △ OF A-LAND  
FOR COOPERATION IN THE AREA OF  
FUSION ENERGY RESEARCH AND RELATED FIELDS**

The △ △ △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 △ △ of A-LA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Sides”);

Pursuant to Article 5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A-L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Government of A-LAND o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signed on December 20th, 1985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and

Desiring to cooperate under the Agreement in research and development in the area of fusion energy and related fields in order to meet the rapidly growing energy requirements in the twenty-first century and to promot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beneficial to both PartiesSides;

Have ~~agreed as follows~~reached the following arrangement:

~~ARTICLE I~~ Paragraph 1  
OBJECTIVE

The objective of this Implementing Arrangement is to promot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Sides in the area of fusion energy research and related fields in order to enhance the Parties' Sides' capabilities to make positive contributions in these fields for their mutual benefit.

~~ARTICLE II~~ Paragraph 2  
FORMS OF COOPERATIVE ACTIVITIES

Forms of cooperative activities may include: conduct of joint or cooperative projects and programs, exchange of technical information, data and experience, collaborative or consultative visits, exchange of technical and managerial personnel for short term assignments, exchange of equipment, materials and instrumentation, joint conferences, seminars or workshops, and such other forms of cooperation as the Parties Sides may agree mutually decide.

~~ARTICLE III~~ Paragraph 3  
MANAGEMENT

aA. Each Party Side shall will designate a Principal Coordinator to supervise cooperative activities under this Implementing

Arrangement. The Principal Coordinators ~~shall~~ will jointly plan and coordinate cooperative activities, co-chair joint meetings for such ~~plan~~ planning and coordination, and prepare and publish an annual Program of Cooperation. Each Principal Coordinator may appoint a Technical Coordinator for each cooperative activity.

bB. The Principal Coordinators ~~shall~~ will meet, on an annual basis, or otherwise as decided upon by ~~mutual consent~~ the Sides, alternately in A-LAND and in the Republic of Korea, or in other locations as decided upon by ~~mutual consent~~ the Sides. The host ~~PartySide shall~~ will choose the meeting site and bear the costs for arrangements associated with the meeting. Representatives from each ~~Party~~ Side attending the meeting ~~shall~~ will be responsible for their own travel and lodging expenses. At these meetings, the Principal Coordinators ~~shall~~ will review and assess the progress of cooperative activities and the next year's plans for continuations of cooperation under this Implementing Arrangement.

cC. The Principal Coordinators ~~shall~~ will jointly prepare a written report of each meeting. Each ~~Party~~ Side ~~shall~~ will ~~have the right to~~ disseminate such report without prior notification to the other ~~PartySide~~, after both ~~PartiesSides~~ have approved the report for release.

dD. The Principal Coordinators may invite representatives of

each of their organizations in the area of fusion energy research and related fields ~~within their countries~~ to attend joint meetings and to serve as advisors to assist in planning the cooperative activities under this Implementing Arrangement and evaluating their progress.

~~ARTICLE IV Paragraph 4~~  
ORGANIZATIONS

The ~~Parties~~ Sides may invite each of their organizations provided for in ~~the paragraph D of the Article III within their countries~~ Paragraph 3. c. to participate in cooperative activities under this Implementing Arrangement, subject to such terms and conditions as the ~~Parties~~ Sides may specify. Such organizations in A-LAND may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the National Institute for Fusion Science and A-LAND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Such organiza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may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the Korea Basic Science Institute, the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ARTICLE V Paragraph 5~~  
EXCHANGE OF PERSONNEL

Unless otherwise ~~agreed~~ mutually decided in writing,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will apply to assignment or exchange

of personnel under this Implementing Arrangement.

- aA. Each ~~Party~~ Side ~~shall~~ will make its best effort to ensure the selection of qualified personnel with skills and competence necessary to conduct the activities planned under this Implementing Arrangement.
- bB. Each ~~Party~~ Side ~~shall~~ will be responsible for the salaries, insurance, and allowances to be paid to its staff or its contractors.
- cC. Each ~~Party~~ Side ~~shall~~ will pay for the travel and living expenses of its staff or its contractors when staying at an establishment of the other ~~party~~Side.
- dD. The ~~Parties~~ Sides ~~shall~~ will arrange for adequate accommodations for each other's staff or contractors (and their families) on a mutually acceptable and reciprocal basis.
- eE. Each ~~Party~~ Side ~~shall provide~~ will provide all necessary assistance to the staff or contractors of the other ~~Party~~ Side as regards administrative formalities.
- ffF. The staff or contractors of both ~~Parties~~ Sides ~~shall~~ will conform to the general rules of work and safety regulations in force effect at their staying establishments.

~~ARTICLE VI~~ Paragraph 6  
GENERAL PROVISIONS

- aA. All cooperative activities carried out under this Implementing Arrangement ~~shall~~ will be subject to the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of A-LAND and the Republic of Korea within their territories, and ~~shall~~ will be subject to the availability of personnel, appropriated funds, and other resources of each ~~Party~~Side.

~~bB.~~ Unless otherwise decided upon by the Sides ~~by mutual consent agreed~~ in writing, each ~~Party~~Side ~~shall~~ will bear its respective expenses incurred in connection with collaboration under this Implementing Arrangement.

~~cC.~~ Any questions of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relating to this Implementing Arrangement ~~shall~~ will be resolved through consultations between the ~~Parties~~ Sides.

## ~~ARTICLE VII~~ Paragraph 7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A.~~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formation of a non-proprietary nature arising from the cooperative activities under this Implementing Arrangement may be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by either ~~Party~~ Side through customary channels and in accordance with the normal procedures of the invited organizations.

~~bB.~~ The ~~Parties~~ Sides ~~shall~~ will give due consideration to the protection and the distribu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r other rights of a proprietary nature resulting



from the cooperative activities under this Implementing Arrangement and ~~shall~~ will consult with each other for this purpose as necessary.

~~ARTICLE VIII Paragraph 8~~

~~ENTRY INTO FORCE EFFECT AND TERMINATION~~

~~aA:~~ This Implementing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will come into effect upon signature by the ~~Parties~~ Sides and remain ~~in force~~ effective for a period of five (5) years provided that the Agreement remains effective, and ~~shall~~ will remain ~~in force~~ effective thereafter indefinitely unless either ~~Party~~ Side notifies the other ~~Party~~ Side in writing six months in advance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this Implementing Arrangement. This Implementing Arrangement may be amended by mutual written ~~agreement~~ decision of the ~~Parties~~Sides.

~~bB:~~ At the discretion of either ~~Party~~Side, this Implementing Arrangement may be terminated upon giving six months advance notice in writing to the other ~~Party~~Side.

~~DONE~~ SIGNED at \_\_\_\_\_ in duplicate, on this \_\_\_\_ day of \_\_\_\_\_,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 OF  
A-LAND

### 3. 보건분야 협력 의향서안

- 2003.7. 한국과 A-LAND △△△부간 체결한 양해각서의 후속조치로 △△△부 소속 연구원과 A-LAND △△△센터(NCID)간 전염병 연구에 관한 의향서(LOI)를 체결코자 함.
- 체결주체는 LOI에 규정된 사항을 소관업무로 하여야 하는바,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 35조의 2 ①에는 “전염병 및 특수질환에 관한 시험, 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하에 ○○○연구원을 둔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연구원은 표제 LOI의 체결주체가 될 수 있음.
- 표제 LOI에는 국내법에 저촉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없는 내용상 한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고, 표제 LOI의 “Based upon our understanding that the △△△ is willing to also support the research activities at the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the NCID anticipates enthusiastically supporting the proposed activities through Dr. ●●●.”라는 규정으로 인해, 연구원의 경비 지출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법적구속력이 없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기승인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비 지원은 국내법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내용상 한계도 충족.

첨부 : 의향서(안)

대한민국 △△△부 국립보건연구원과  
A-LAND △△△센터 NCID 간의 의향서

A-LAND △△△ 센터 NCID 엔테로바이러스과 과장 M. A. ○○○ 박사  
와 질병관리본부 소화기바이러스과 과장 ●●● 박사는 △△△ 부 산하  
질병관리본부 바이러스부에 엔테로 바이러스 규명을 위한 새로운 방법론  
을 모색하고자 협력 연구 사업을 제안하였다. 바이러스 특성 연구의 적시  
성과 완결성 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법론 모색의 필요성은 최근 서태평양지  
역과 대한민국에서 엔테로바이러스 질환이 수 차례 발생하면서 더욱 분명  
해졌다. 이러한 기술 및 접근방법은 △△△ 부 내 다른 질병 연구와 감시  
활동에 광범위한 적용이 가능해질 것이며, 잠재적인 질병 위협에 대한 중  
대한 정보도 제공할 것이다.

M. A. ○○○ 박사는 질병통제예방센터 바이러스, 리켓치아성질병부  
내 엔테로바이러스과를 20년 동안 담당하며 수많은 국제 협력 사업, 바이  
러스 특성 연구 및 방법론을 질병 감시 활동에 적용하는데 참여했다.  
NCID는 대한민국 △△△부도 질병관리본부의 연구 활동을 지원할 의사가  
있다는 이해 하에, M. A. ○○○ 박사를 통해 제안된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을 기대한다. NCID는 M. A. ○○○ 박사가 제출한 일차 예산안을 보  
고 이를 승인하게 될 것이다.

---

국립전염병센터  
△△△센터

---

○○○ 연구원  
△△△부

**Letter of Intent**  
**Between the Institute of Health of the Korean Ministry of △△△**  
**and**  
**The National Center for △△△ of A-LAND CDC**

It is our understanding that Dr. M. A. ○○○, Head of the Enterovirus Laboratory, NCID, and Dr. ●●●, Chief of the Division of Enteric and Hepatitis Viruses, NIH have proposed a collaborative research project to establish new methodologies for enterovirus identification at the Department of Virology,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of the Ministry of △△△. The needs for new methodologies to improve the timeliness and completeness of virus characterization have been evident during several recent outbreaks of enterovirus disease in the Western Pacific Region and within the Republic of Korea. In addition, the expansion of these techniques and approaches will be broadly applicable to other disease research and surveillance activities within the Ministry of △△△. The collaboration will also provide important information about potential emerging disease threats in this region of the world.

Dr. M. A. ○○○ has headed the Enterovirus Laboratory at CDC for 20 years within the Division of Viral and Rickettsial Diseases, which has engaged in numerous international collaborative projects, in the research and characterization of viruses and application of these methodologies to disease

surveillance activities. Based upon our understanding that the Ministry of △△△ is willing to also support the research activities at the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the NCID anticipates enthusiastically supporting the proposed activities through Dr. M. A. ○○○. The NCID has seen and approved the preliminary budget proposal from Dr. M. A. ○○○ and this proposal meets with the approval dependent upon future financial commitments of the Center and the Ministry of △△△.

---

National Center for Infectious  
Diseases

Centers for △△△

---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Ministry of △△△

## 4. 비상관리협력 관련 약정안

### □ 개요

- 비상사태 관리에 관하여 우리나라 국무총리 보좌기관인 △△△위원회와 A-LAND 국방부 소속기관인 △△△위원회 간의 협력을 규정

### □ 체결주체

- 우리나라 국무총리부와 A-LAND △△△부 간 양해각서로 되어 있는바, 우리나라 국내법상 국무총리부라는 독립된 행정관청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 아울러, 기관간 약정의 체결기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동 약정 전문의 “on behalf of the State of A-LAND” 및 “on behalf of the Republic of Korea”는 삭제되어야 함.

### □ 기관간 약정은 다른 기관관 약정 체결의 근거가 될 수 없음

- 동 약정에는 동 약정의 이행을 위한 별도의 Implementing Agreement 체결을 규정하고 있는바, 기관간 약정은 법적구속력이 없는 문서이므로, 다른 기관간 약정 체결의 근거가 될 수 없음.
- 동 약정 제4조에 언급된 국방비밀자료 및 정보보호에 관한 우리나라 국방부와 A-LAND 국방부간 협정은, 기관간 약정에 협정이라는 잘못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우리나라 국방부와 A-LAND 국방부 간의 법적구속력 없는 기관간 약정에 불과하므로, 동 약정의 근거가 될 수 없음.

- 기관간 약정에 비밀정보 및 자료에 대한 보안의무를 규정할 수 없음.
  - 동 약정 제4조에는 동 약정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밀 정보 및 자료를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기관간 약정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를 규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법적 구속력이 없는 기관간 약정에 비밀정보 및 자료에 대한 보안의무를 규정할 경우, 상대방의 관리소홀로 비밀정보 및 자료 보안에 문제가 발생하여도 동 약정을 근거로 법적책임을 물을 수 없음.
  
- 기관간 약정에 면책 조항을 규정할 수 없음
  - 동 약정에는 동 약정에 근거한 활동의 결과 그들의 직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손해, 부상 및 사망에 대하여 우리나라 △△△위원회와 A-LAND △△△부 상호간 책임을 지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음.
  - 동 면책조항은 구체적으로 ① 어느 일방 당사자가 동 약정에 근거한 활동의 결과 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일체의 법적 권리를 포기할 것과 ② 일방의 직원들이 동 약정에 근거한 활동의 결과 받게 된 일체의 손해, 부상 및 사망에 대하여 타방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야 하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음.
  - 이는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반드시 조약으로 규정해야 하는 사항임.
  - 상기 조항에 의할 경우, 동 약정에 근거한 활동의 수행 중에 소속직원에게 발생한 손해, 부상 및 사망에 대하여 누가 배상할 것인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 기관간 약정의 해석 및 이행에 관한 분쟁해결조항을 규정할 수 없음

- 기관간 약정에 규정된 내용은 기본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따라서 약정에 규정된 내용에 대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양 기관간 협의로써 해결하는 것이 기관간 약정의 취지에 부합
  - 동 약정에는 우리나라 △△△위원장과 A-LAND △△△위원장에게 동 약정의 해석 및 약정에 규정된 활동과 관련한 모든 분쟁을 해결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들에 의하여 내려진 결정이 최종적이며, 동 약정 이행에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속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양국간 체결된 조약 및 우리나라 국내법상 우리나라 △△△위원장 및 A-LAND △△△위원회 위원장의 결정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근거규정이 없는 한, 이를 기관간 약정에 규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 기관간 약정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 문제
- 동 약정에는 교육, 훈련 참가 및 장비 등의 구입에 따른 특별비용의 경우, 재정 부담은 양 기관간 별도로 합의된 바에 따라 처리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동 비용의 지출은 △△△위원회에 기승인된 예산의 범위를 넘을 수 없음.

□ 결론

- 동 약정은 법적구속력이 없는 기관간 약정으로서, 동 약정에 규정된 비밀자료 및 보안의무, 면책조항, 분쟁해결조항은 기관간 약정에서 규정하기에는 부적합한 내용이므로, 동 부분을 삭제하여 기관간 약정 체결을 추진하거나, 양국간 법적구속력 있는 합의인 조약의 형식으로 체결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첨부 : 검토 수정안(상기 검토의견을 반영한 2차 수정안)



~~-001632-~~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Cooperation  
Between  
the △△△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inistry of △△△ of the State of A-LAND**

~~(on cooperation and exchange of experience)~~

~~the~~ The △△△ Commission (EPC)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the Ministry of △△△ of the State of A-LAND (IMOD)  
(hereinafter referred to as ÷ “the Sides”); ÷

D~~desiring~~ to promote cooperation between the △△△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A-LAND △△△ Board relating to the development of emergency preparedness, development such as including the mobilization system of national resources and mutual information exchange on security-related matters; ÷

Being ~~e~~onvined ~~Convinced~~ that ~~the~~ cooperation and exchange of experience will enhance the mutual understandings between the Sides;

Have ~~agreed as follows~~reached the following understanding:

Article Paragraph 1: Scope  
of MOU

1. The Sides express their intention and desire to:
  - a. ~~E~~establish a framework to facilitate the exchange of information and ideas in order to examine, develop and refine the emergency response systems of the Sides;
  - b. ~~d~~Develop a framework of close and effective collaboration between the Sides through training attachments in mutually beneficial areas;
  - c. ~~c~~Create opportunities for joint initiatives and bilateral cooperation between the Sides ~~on~~ in professional areas that will enable the Sides to enhance their emergency preparedness and capabilities ~~of the Sides~~; and
  - d. ~~Establish~~ establish a framework to facilitate collaborative projects and activities between the Sides, especially in the field of emergency preparedness, on the basis of equality, reciprocity and mutual ~~interests~~benefit.
  
2. ~~It is agreed by the Sides that~~The scope and details of the activities to be performed will be subject to separate Implementing ~~Agreements~~Arrangements.

~~Article Paragraph 2 : Cooperative Activities to be performed~~

1. ~~The Sides agree to co-operate on~~ Cooperative activities under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hereinafter referred to as “MOU”) may include:

- ~~ba.~~ Exchange Visits: Apart from ~~the~~ scheduled visits, the Sides may, as and when required, organize and facilitate visits to share ~~lessons~~ information and experiences relating to the mobilization of financial/human resources and material in response to security-related crisis and mass disasters, including man-made and natural disasters whether or not occurring in the Sides’ countries;
- ~~be.~~ Seminars and Workshops: Seminars and Workshops may be held to enable emergency planners and operatives of the Sides to present and discuss topics and issues related to emergency situations;
- ~~dc.~~ Collaborative Programmes: Both Sides will study and exchange knowledge on emergency management in areas of mutual interest ~~of~~ to the Sides.

~~Paragraph Article 3 : The Mechanism for Managing the  
MOU Committees~~

1. The Sides will ~~collaborate according to the following arrangements~~ establish the following committees and working

groups to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this MOU:

- a. Steering Committee: The ~~Chairman~~ of the △△△ Commission and the ~~Acting Chairman~~ of the △△△ Board of A-LAND will co-chair the Steering Committee. The other members of the Steering Committee ~~from EPC~~ will be, for the EPC, the Secretary General and the Policy Management & Public Relations Director, and; ~~Correspondingly, the other members of the Steering Committee from~~ for IMOD, will be the Deputy to the ~~Acting Chairman~~ of the △△△ Board and the Head of Instruction and Exercise; ~~and~~
- b. Working Committee: The Working Committee will meet on yearly basis, ~~through~~ alternately ~~visits to~~ in Korea and A-LAND ~~at mutually agreed period~~ on dates to be jointly decided by the Sides. The Working Committee ~~to~~ will discuss issues of mutual professional interest and embark on areas of cooperation as specified above. ~~The Working Committee~~ It will submit a joint workplan outlining the proposed areas of bilateral cooperation and ~~the~~ a schedule for ~~completion~~ implementation ~~and~~ as well as a joint progress report detailing ~~the~~ its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of the Working Committee~~ to the ~~Chairmen~~ Chairs of the Steering Committee, at the beginning and end of the work year respectively, for endorsement by the Steering Committee; ~~;~~ and
- c. Working Groups: As and when deemed ~~required~~ necessary

by the Steering Committee ~~of~~ or Working Committee, additional Working Groups may be established to undertake projects on more specific areas of mutual interests to the Sides. Such Working Groups ~~shall~~ will be ~~nominated~~ established on an ad-hoc basis.

2. The ~~roles~~-duties of the Steering Committee are as follows:
  - a. to ~~D~~determine the overall thrust and directions of various projects to be undertaken by the Working Committee and any additional Working Groups~~;~~ ;
  - b. Ato approve proposals and reports submitted by the Working Committee and Working Groups; and
  - c. to rResolve any disputes arising from the activities of the Working Committee and Working Groups.

#### ParagraphArticle 4 : Security Provisions

1. The Provisions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ROK MND and IMOD for on the Protection of Defence Classified Data and Information* dated August 27th, 1995 ~~shall be used~~will be used for the purpose of the protection of information ~~, due to the cooperation according to~~exchanged under this MOU.

2. All participants in the activities to be ~~performed~~carried out ~~according to~~under this MOU ~~shall~~ will be security-cleared prior of to the commencement of any ~~mutual~~ cooperative activities.

3. Both Sides ~~shall~~ will treat all information and know-how arising from or received in any way in connection with the activities ~~to be performed following~~carried out under this MOU according to the security classification of each activity.

4. All materials, documents and personal notes arising from or in connection with the activities to be performed under this MOU ~~shall~~ will be treated as ~~C~~classified ~~M~~material and ~~I~~information and protected accordingly.

#### Article Paragraph 5 : ~~Financial Aspects~~Costs

1. ~~Either~~ Each Side ~~shall~~ will cover its own expenses while performing its ~~obligations~~ commitments under this MOU.

#### ParagraphArticle 76: Unforeseen Events

Any activity undertaken pursuant to this MOU will be suspended if an unforeseen event occurs that renders it impossible for that activity to continue. These activities will resume as soon as the event which affected their conduct terminates or abates. Where it is not possible to resume the activities after a reasonable time, any ~~sums paid~~funds provided for such activities ~~shall~~ will be refunded to the Side ~~wh~~which ~~paid these sums~~provided such funds, except that the receiving Side ~~receiving the sums~~ may retain an amount equal to expenses incurred by that Side for the affected activities.

Article Paragraph 87: Resolution of Disputes

1. Any dispute pertaining to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MOU ~~or to any activity conducted pursuant to its terms shall~~ will be referred to the Director of the △△△ Commission of the ROK and the Director ~~(Acting)~~ of the △△△ Board of IMOD, who ~~shall~~ will consult each other in order to resolve the dispute.

2. Any decision made by Director of the △△△ Commission of the ROK and the Director ~~(Acting)~~ of the △△△ Board of IMOD ~~shall~~ will be final, and will bind ~~all~~ the persons responsible for implementing this MOU.

~~3. The MOU shall remain in full effect and all activities undertaken pursuant to its provisions shall continue notwithstanding that the dispute has been referred to the Arbitrators.~~

4.3. The Director of the △△△ Commission of the ROK and the Director ~~(Acting)~~ of the △△△ Board of IMOD reserve the rights to determine the procedures for deciding on any dispute referred to them.

Paragraph Article 98: Notices Communications

1. Any notice or communication required or permitted to be given under this MOU ~~shall~~ will be forwarded to the following addresses or sent by ~~Telefax~~telefax, subject to security restrictions.

2. All communications ~~generated by either Side~~between the Sides ~~to~~under this MOU ~~shall~~ will be made in writing in the English language.

3. All notices and communications as mentioned above ~~shall~~ will be ~~effected as follows~~sent to the following Points of Contact:

<u>EPC</u> -----	<u>IMOD</u> -----
<u>△△△Commission</u>	<u>Ministry of △△△</u>
<u>Gwacheon</u>	<u>Hakirya</u>
<u>Gyeonggi, South Korea</u>	<u>○○○, A-LAND</u>
Phone:-----	Phone:-----
Fax:-----	Fax:-----

4. The Points of Contact may be changed ~~from time to time~~as necessary by either Side. Any such change will be notified in a timely manner to the other Side.



Article Paragraph 10.9 : Duration and Termination of the MOU

1. This MOU will ~~remain~~ come into effect upon its signature by both Sides and in effect for a five year period, ~~following its signing and~~ It will be extended for a successive five year periods, unless either ~~of the~~ Side informs the other of its intention not to prolong this MOU at least \_\_\_ months before the expiry of the relevant period.

2. If, however, either Side considers ~~if~~ it necessary, for compelling national reasons, to terminate its participation under this MOU before the end of the five-year period, or any extension thereof, written notification of its intention will be given to the other Side one year in advance of the effective date of termination.

3. Such notification of intent ~~shall~~ will become a matter of immediate consultations with the other Side to enable the other Side to fully evaluate the consequences of such termination and, in the spirit of cooperation, to take such actions as necessary to alleviate problems that may result from the termination. In this connection, although ~~the~~ this MOU may be terminated by ~~each~~ either Side, any ~~implementing~~ Implementing Agreement ~~Arrangement entered into~~ that came into effect, consistent ~~With~~ with the terms of this MOU, ~~sh~~will continue to remain in effect, if it is so specified in the terms of the

specific Implementing Agreement Arrangement.

~~Article Paragraph 1110: Miscellaneous~~

1. This MOU may be amended only in writing and with the express ~~agreement~~ consent of both Sides.
2. There ~~shall~~ will be no assignment of this MOU or the conduct of activities pursuant to this MOU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both Sides.

~~Article 12: Effective Date~~

~~This MOU shall become effective upon signature by both Sides~~

Signed in duplicate at \_\_\_\_\_ on \_\_\_\_\_, 2007,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Commission      For the Ministry of △△△  
of the Republic of Korea      of the State of A-LAND

\_\_\_\_\_IMOD\_\_\_\_\_EPC\_\_\_\_\_

Signature \_\_\_\_\_ Signature : \_\_\_\_\_

Name : \_\_\_\_\_ Name : \_\_\_\_\_

114  
115

Title : \_\_\_\_\_ Title : \_\_\_\_\_  
Name : \_\_\_\_\_ Name : \_\_\_\_\_  
Title : \_\_\_\_\_ Title : \_\_\_\_\_

For the Ministry of △△△ \_\_\_\_\_ For the △△△ Commission \_\_\_\_\_  
of the State of A=LAND \_\_\_\_\_ of the Republic of Korea \_\_\_\_\_

## 5. 투자협력위원회 설치 협정안

### □ 정부간협정으로의 체결 필요성

- 이 협정안은 한·A-LAND 양국간 투자협력을 촉진·조정하기 위한 투자협력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투자협력위원회의 기능은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등 다수 정부부처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므로, 이 위원회의 설치를 위한 협정은 정부간 협정(조약)으로 체결할 필요성이 인정됨.
- △△△부가 교섭·성안한 이 협정안에는 기관간 약정 규정사항과 조약 규정사항이 혼재되어 있는 등, 조약안으로서의 내용·형식상 미비점이 있는 바, 이 협정이 정부간 협정으로 체결되어야 할 것임을 감안, 조약체결 소관부처인 외교통상부가 관계부처의 의견을 종합한 후 협정안을 재작성하여 문안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 □ 관계부처 협의 필요사항

#### 가. 투자협력위원회의 기능

##### (1) 기존 공동위와의 관계

- 한·A-LAND 양국 간에는 이미 경제·무역·기술협력공동위원회와 산업협력공동위원회가 정부간협정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음.
- 상기 공동위들의 설치목적과 활동범위는 「투자협력위원회」와 구별되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위원회간 인적 구성과 기능이 상호 중복될 수 있음.
- 따라서, 기존 공동위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부처 간에 「투자협력위원회」의 신설 필요성 및 운영 방침에 관하여 협의할 필요가 있음.

##### (2) 투자보장협정과의 관계

- 1992년 체결된 한·A-LAND 투자보장협정 제14조는 협정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양국 정부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표제협정 문안상 「투자협력위원회」는 상기 투보협정 공동위와는 다른 위원회로 판단되는 바, 투보협정 공동위 기능도 포함하여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향후 별도로 투보협정 공동위를 설치할 것인지 여부를 관계부처간 협의할 필요가 있음.

(3) 위원회의 기능 규정 방식

- 이 협정안의 핵심적 규정인 제2조 2항은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다음사항에 대하여 협력활동을 강화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관계를 설정하는 조약문안으로는 부적절한 표현이며, 특정 목적을 위하여 설치되는 위원회의 성격상, 「한·A-LAND 경제·무역·기술공동위 설립협정」제1조에서와 같이 위원회의 기능이 구체적으로 명확히 기술되어야 할 것임.

나. 투자협력위원회의 인적 구성 및 주재관

- 표제협정안 제3조 1, 2항은 △△△부장관을 투자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부 차관보 및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을 동 위원으로 규정하고, 아울러 △△△부 관계국장이 실무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당연 수입토록 하고 있으나, △△△부측 당연직 위원 지명규정은 우리 국내법(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과 저촉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하고, 한·A-LAND 경제·무역·기술공동위 설립협정 제2조와 같이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실제 운용 과정에서 위원회의 구성은 외교부, 재경부 등 국제투자업무 관계부처간 사전 합의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정무간 협정에서 특정부처를 지칭, 주재관 상호파견을 규

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필요시에는 “관계부처간 상호파견”토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협정안의 형식

- 이 협정안은 일반적인 조약문 형식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고, 아울러 교섭문안으로써 영어본을 작성하여야 할 것임.
- 주요 수정 필요사항은 아래와 같음.
  - 본문 제1조(투자협력 증진의 중요성)는 이 협정의 체결목적인 투자협력위원회의 설치·운영 규정과는 무관하므로 전문에 반영
    - 아울러, 조약명·전문 사이에 서명일시·장소·발효일자 기재 삭제
  - 제4조 1, 2항에서 최초회의 시기·장소를 규정하는 후문은 삭제
  - 협정안 제6조 3항은 삭제하고 최종조항(별첨3)을 규정
  - 서명자 성명·직함 및 서명일시·장소 기재 삭제.

〈참고자료 1〉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establish the Joint Committee for Economic, Trade and Technical Cooper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Joint Committee”). It shall undertake the following functions:

- (a) to exchange views on measures to encourage economic, trade and technical cooperation and to resolve any problem arising from such cooperation;
- (b) to review the implementation of the existing or future relevant economic and trade Agreements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 (c) to make recommendations to the respective governments on whatever necessary measures to enhance such cooperation; and
  - (d) to identify other forms of cooperation mutually agreed upon by the Contracting Parties.
- 위원회의 기능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 위원회에 구속력 있는 결정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협의 및 권고 기능에 국한

### 〈참고자료 2〉

The Joint Committee shall be headed by the Co-chairman of the senior official designated by each Contracting Party.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notify each other of the composition of their delegations prior to each session.

- 공동위원장은 “각 체약당사자가 임명한 고위관리자”가 수임하고, 대표단원은 “각 회기마다 통보”하도록 규정하여야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저촉 문제가 생기지 않음.

### 〈참고자료 3〉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_\_\_\_\_ on this \_\_\_\_\_ day of \_\_\_\_\_, 2007, in the Korean, ◇◇◇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 조약문으로 변경 수정안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A-LAND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OINT COMMITTEE  
FOR ECONOMIC, TRADE AND TECHNICAL COOPERATIO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A-LA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tracting Parties”),

Desiring to expand and accelerate th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economic, trade and technical fields on the basis of principles of equality and mutual benefit,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establish the Joint Committee for Economic, Trade and Technical Cooper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Joint Committee”). It shall undertake the following functions:

- (a) to exchange views on measures to encourage economic, trade and technical cooperation and to resolve any problem arising from such cooperation;



- (b) to review the implementation of the existing or future relevant economic and trade Agreements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 (c) to make recommendations to the respective governments on whatever necessary measures to enhance such cooperation; and
- (d) to identify other forms of cooperation mutually agreed upon by the Contracting Parties.

## **Article 2**

The Joint Committee shall be headed by the Co-chairman of the senior official rank designated by each Contracting Party.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notify each other of the composition of their delegations prior to each session.

## **Article 3**

The Joint Committee shall meet once a year,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The sessions shall take place alternately in Seoul and Beijing.

## **Article 4**

The relevant Department or Ministry designated by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be the executive body to this Agreement.

## Article 5

1.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when the Contracting Parties notify each other that all legal requirements for its entry into force have been fulfilled.
2.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for the period of three years, and thereafter it shall be automatically extended for successive periods of one year, unless either Contracting Party notifies in writing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this Agreement six months prior to its expiration.
3. This Agreement may be amended by mutual cons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 on 30th day of September 2007, in the Korean, ◇◇◇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THE A-LAND

## 6. 산업기술협력 시범기금에 관한 양해각서안

### □ 개요

- 우리나라 △△△부와 A-LAND △△△부 간 양국의 민간기업간 공동연구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한·A-LAND 산업기술협력 시범기금 (Pilot fund)”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안
- A-LAND측 양해각서(안)는 향후 본격적인 “한·A-LAND 산업기술협력기금”의 조성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우선 우리측 △△△부와 A-LAND측 △△△부간 기관간 약정을 체결하여 한시적으로 소규모 “시범기금(Pilot Fund)”을 설치·운영해 보자는 내용임.

### □ 기관간 약정으로 표제 시범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 가. 문제점

- 양해각서(안)에 의하면, 양국은 “한·A-LAND 산업기술협력 시범기금”의 조성을 위해 매년 25만 달러를 3년간 계속 출연함.
  - 이에 따라, 비록 소규모이더라도 우리 정부의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바, 이러한 재정부담 관련사항을 A-LAND측 초안과 같이 기관간 약정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문제됨.

#### 나. 기관간 약정과 재정부담 규정

- 기관간 약정(Agency-to-Agency Arrangement)은 정부기관간(체결주체) 소관업무(체결범위)에 대한 기술적 협력사항(규정내용)을 약속하는 단순한 합의문서이며 조약이 아님.
- 따라서, 기관간 약정은 새로운 예산조치를 필요로 하는 재정부담에 대한 구속적 합의사항을 규정할 수 없음.
- 다만, ① 모조약의 명시적·구체적 위임규정이 있거나, ② 당해 기관의 소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집행의 경우에는 기관간 약

정으로도 재정부담 관련사항을 규정할 수 있음.

다. 표제 양해각서(안)의 재정부담 규정

1) 모조약의 위임규정

- 양해각서(안)는 전문에 한·A-LAND 무역·경제관계발전협정 및 한·A-LAND 과학기술협력협정을 그 모조약으로 명시하고 있음.
- 상기 모조약의 다음 규정들은 A-LAND측안과 같이 기관간 약정으로도 「한·A-LAND 산업기술협력 시범기금」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구체적 위임규정으로 해석되며, A-LAND측 안의 모든 규정들은 이러한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음.

※ 한·A-LAND 무역·경제관계발전협정 제5조

: 양국 정부는 각기의 관계기업과 기관이 산업상 협력의 적당한 분야의 범위를 개척하는 것을 장려하며, 또한 각기의 법령과 부 정책에 따를 것으로 하여 이러한 협력을 촉진한다.

※ 한·A-LAND 과학기술협력협정 제2조, 제3조, 제7조

제2조(목적 및 원칙)

③ 당사자는 다음 원칙에 근거하여 과학 및 기술관계를 수행한다.

바. 양 당사자의 경제적·사회적 이익 및 산업개발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개발 성과의 증진에의 협력

④ 당사자는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 및 산업의 이익을 위하여 연구결과를 적시에 응용하도록 장려한다.

제3조(협력활동)

④ 협력활동은 다음 활동들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

정되지 아니한다.

가. 공동 워크샵, 공동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그리고 기타 협력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의 수행

⑥ 당사자가 자금 또는 인력의 제공을 통하여 협력활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당사자는 참가자간 계약 또는 자금지원 조건의 적절한 이용을 통하여 이 조에 규정된 그들의 의무를 이행한다.

⑧ 당사자는 주요 정부후원 및 정부지원 연구 프로그램을 협력활동의 일부로 포함할 수 있다.

#### 제7조(자금)

협력활동에 대한 당사자의 지원은 자금의 이용가능성과 각 당사자의 적용가능한 관련 정책 및 법령에 의한다.

#### 2) 정부기관의 소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집행

○ A-LAND측 양해각서(안) 제5조 1항은 우리측의 시범기금 출연이 △△△부 예산에 계상되는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으로 부터 이루어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일반회계)은 △△△부의 주요 소관업무에 해당하여 계속적 예산편성 및 집행이 예상되고, 기금출연 규모가 소규모(연간출연액인 25만호주불은 약 1억7천만원)이며, 동 기금의 수혜자도 국내기업이라는 점에서, 동 출연행위를 정부기관의 소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집행으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음.

○ 다만, 예산의 기 계상(既計上) 여부에 따라 국제적 합의문서의 체결방식이 당연히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이는 구체적 규정 내용의 법적 성격에 따라 결정될 문제임.

- 우리 예산회계법의 회계년도 독립원칙에 의하면, 금번 회계년도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도, 다음 회계년도의 예산안 편

성·의결 및 집행은 별개의 문제가 된다는 점에서,

- 만약, A-LAND측 양해각서(안)가 우리 정부에 매년 기금출연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면, 기관간 약정은 이러한 의무를 창설할 수 없으므로, 이는 조약으로 체결되어야 할 것임.

- A-LAND측 양해각서(안) 제6조 1항은 “양측이 시범기금의 조성을 위해 매년 25만 달러를 출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동 5항은 “양측은 시범기금출연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규정하여, 우리 정부의 기금출연행위가 법적 의무인지 여부에 관해 혼란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음.
- 따라서, 동 양해각서(안)를 기관간 약정으로 체결하기 위해서는 아래 수정문안과 같이 제6조 1항과 동 5항을 통합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수정문안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동 양해각서(안)는 기관간 약정 형식으로 체결할 수 있음.

- \* 제6조 1항 수정문안 ( \_\_\_\_\_ : 추가된 부분, ■■■ : 삭제된 부분)  
“Over the life of the Pilot Fund, each Side (the Parties) will (each) do best efforts to make available up to Two Hundred and Fifty Thousand Australian dollars (A\$250,000) per year for projects to be supported by the Pilot Fund.”
  - 시범기금 출연은 구속적 의무가 아니라는 점이 보다 명확해 지도록 1항 문안을 수정함(5항은 삭제).

- 첨부 : 검토 수정안

※ ( \_\_\_\_\_ : 추가된 부분, \_\_\_\_\_ : 삭제된 부분)

**ARRANGEMENT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MINISTRY OF △△△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AUSTRALIAN) DEPARTMENT OF △△△  
OF A-LAND**

**FOR (ON)**

**THE PILOT KOREA-A-LAND  
INDUSTRIAL TECHNOLOGY COOPERATION FUND**

The Ministry of △△△ (hereinafter called “the MOCI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A-LAND) Department of △△△ (hereinafter called “the ISR”) of A-LAND (hereinafter called “the Sides (Parties)”),

Acknowledging the mutual interest in developing closer industry-based research and development coope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A-LAND,

Convinced that mutual cooperation in joint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enhances opportunities for national develop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A-LAND,

Referring to the Agreement on the Development of Trade and Economic Relations signed (done) on 17 June 1975, the Arrangement on Industry and Technology Cooperation signed on 21 November 1996, and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A-LAND on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signed on 17 September 1999, (which entered into force on 5 April 2000,)

Have reached the following Arrangement (mutually decided):

## 1. Pilot Fund

1. The Sides (Parties) will jointly establish a fund to be referred to as either the Pilot Korea-A-LAND Industrial Technology Cooperation Fund or the Pilot A-LAND-Korea Industrial Technology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called “the Pilot Fund”).

2. The objective of the Pilot Fund is to test the scope to build stronger, commercially focused, R&D linkage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A-LAND by means of a larger-scale joint Industrial Technology Cooperation Fund.

## 2. Working Arrangements

1. The Sides (Parties) will establish a Joint Committee, of at least



- 2 members, one each from Korea and A-LAND, for the purpose of:
- facilitating regular consultation on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Pilot Fund;
  - sharing information on potential projects and funding applications;
  - making joint funding decisions; and
  - evaluating the operation of the Pilot Fund.

2. The Joint Committee will meet at least twice in the three-year period following the signing of this Arrangement (Memorandum of Understanding).

3. The working methods of the Joint Committee will rely substantially on ongoing communication and consultation outside the Committee's formal meetings. In particular, while funding decisions will require the unanimous consent of the Committee, this may be facilitated through telephone communication, e-mail and correspondence.

### **3. Eligible Projects**

1. Only joint projects between Korean and A-LAND businesses, which include joint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joint marketing plans, will be considered for support by the Pilot Fund.

2. Both the Korean business and the A-LAND business will **(should)** have a significant contributing role to the Project.

3. Only projects which would not be able to proceed satisfactorily without support from the Pilot Fund will be eligible for assistance.

#### **4. Eligible Project Costs**

Eligible project costs will comprise **(:)** the R&D portion of the project **(:)** and international travel and accommodation related to the R&D portion of the project.

#### **5. Assessment of Projects**

1. Prior to consideration by the Joint Committee, the MOCIE and the ISR will independently assess the eligibility and merit of applications. For the MOCIE, all eligibility and merit criteria, and all related definitions will be the same as those of the Korean International Joint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Program. For the ISR, they will be the same as those of the grant element of the A-LAND R&D (Core) Start Program.

2. Projects will only be funded by the Pilot Fund with the unanimous consent of the Joint Committee.

## 6. Funding

1. Over the life of the Pilot Fund, each Side (the Parties) will (each) make best efforts to keep available up to Two Hundred and Fifty Thousand A-LAND dollars (A\$250,000) per year for projects to be supported by the Pilot Fund.

- 기금출연행위의 성격과 관련하여, 제6조 1항과 동 5항은 상호저촉의 소지가 있으므로, 시범기금 출연은 구속적 의무가 아니라는 점이 보다 명확해지도록 1항 문안을 수정함(5항은 삭제).

2. Financial support to Korean businesses through the Pilot Fund will be funded by the MOCIE, and those businesses will be accountable to the MOCIE for such financial support. Financial support to △△△ businesses through the Pilot Fund will be provided by the ISR, and those businesses will be accountable to the ISR for such financial support.

3. The MOCIE will, at most, match the contribution to eligible project costs made by the Korean business. The ISR will, at most, match the contribution to the eligible costs of a project made by the A-LAND business.

4. Typically, funded projects will receive financial support from both of the Sides (Parties). However, funding by the MOCIE or the ISR only is allowable with the unanimous support of the Joint Committee.

(5. The Parties will make best efforts to ensure they fully expend their funding commitments to the Pilot Fund over the course of its life.)

5.(6.) It is anticipated that the Pilot Fund will provide financial support to approximately 3 to 5 projects per year.

## 7. Intellectual Property

1. The Sides (Parties) recognise the importanc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as defined in 2 of the Convention establishing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sation, ) in the works applied and created in the context of collaborative activities.

2. A letter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Korean and A-LAND business participants in a proposed project, or an agreement regarding intellectual property, setting out existing and proposed ownership and disposi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sociated with the project, will be lodged with an application for funding from the Pilot Fund.

3. The Korean and A-LAND business participants in a proposed project will be encouraged to include in their letter of understanding (or agreement) on intellectual property all salient elements of the Annex (on protection, ownership and allocation of property rights) to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A-LAND on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 8. Dispute Resolution

Any differences arising out of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Arrangement will be solved in an amicable way through consultation of the Sides.

- “협약에 의한 분쟁해결”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 9.(8.) Entry into force, Termination and Amendment (Effect)

1. This Arrangement (MOU) will take effect from #day month year#, and (It) will remain in effect for three (3) years, unless terminated by either Side party giving six (6) months notice in writing.

2. This Arrangement (It) may be amended at any time by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Sides (Parties); except for the provisions related to funding of the Pilot Fund.

- 기금출연 관련규정은 개정범위에서 제외됨을 확인하는 단서를 추가함.

Signed at \_\_\_\_\_ on the \_\_\_\_ day of \_\_\_\_\_, in duplicate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all (both) texts being equally valid (authentic).

\_\_\_\_\_  
FOR THE MINISTRY OF △△△ FOR THE DEPARTMENT OF △△△  
OF THE REPUBLIC OF KOREA OF A-LAND

## 7. 질병관리기구 간 양해각서안

- 기관간 약정은 정부기관간 소관업무 범위 내에서 행정적, 기술적 협력 사항을 규정하는 합의문서이며, 약정의 체결주체는 행정결정의 최종단계에서 당해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 표시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관 계법령상 부여받은 행정기관(각부 장관, 청장 등)임.
- 상기를 감안할 때 표제 양해각서안의 우리측 체결주체는 질병관리 및 관련 국제협력 사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의 장이 되어야 함. “△△△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18\*\*\*호)” 제27조의 질병관리본 부가 관장하는 업무에는 “국제협력”의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반면, 동 직제 제10조 제3항 제35호에는 △△△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은 기획관리실장이 분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표제약정안의 체결업무를 질병관리본부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표제약정안의 제목과 전문, 본문, 서명란에 명기된 우리측 체 결주체는 △△△부장관이 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A-LAND측 체결주 체 역시 우리나라 △△△부장관에 상응하는 A-LAND △△△부장관 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약정주체가 △△△부장관이라 하더라도, A-LAND측 서명예정 자가 △△△부 질병관리본부장임을 감안할 때, 우리측 △△△부장관이 우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동 양해각서안을 대리서명하도록 위임함으 로써 예정대로 양 인사간에 서명할 수 있을 것임.
- A-LAND측은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우리측 표제약정의 체결주체는 △ △△부가 아닌 질병관리본부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나, 기관간 약정의

체결시 우선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상호주의 이전에 국내법의 한계 내에서 약정의 이행이 가능한가의 여부임.

- 질병관리본부가 △△△부를 대리하여 약정의 체결주체가 될 경우, 표제 약정의 체결주체는 여전히 △△△부장관이 되나, 질병관리본부장이 △△△부장관을 대리하여 표제약정에 서명하는 것이 가능함.
- 이 경우, 표제 약정안 제목의 우리측 체결주체는 The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on behalf of the Ministry of △△△ of the Republic of Korea로 표기되어야 하고, 우리측 서명란은 FOR THE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ON BEHALF OF THE MINISTRY OF △△△ OF THE REPUBLIC OF KOREA로 표기되어야 함.
- 또한, 서명 이전에 △△△부장관이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표제약정을 대리서명하도록 위임하는 내부절차를 거쳐야 함.
- 동 약정의 언어조항에 관해 약정안 VI에는 표제약정을 한국어본, A-LAND 어본, 영어본 각각 3부씩 모두 9부를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관간 약정에서는 철저한 각 언어본간 대조, 검독이 어려운 관계로 각 언어본의 내용이 상이한 데에서 오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어본만으로 2부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첨부 : 검토 수정안

※ [redacted] : 수정 및 추가된 부분

〈Draft〉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on behalf**  
**of the Ministry of △△△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on behalf of the**  
**Ministry of △△△ of the A-LAND**  
**on Health and Medical Sciences**

The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on behalf of the Ministry of △△△ of the Republic of Korea (KCDC) and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on behalf of the Ministry of △△△ of the A-LAND (CCDC),

-g Guided by the willingness to develop fruitful collaboration between their respective institutes in the field of public health research and activities for the control of infectious diseases and chronic diseases,

-h Have agreed to reached the following arrangement:

**I**

KCDC and CCDC,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cipants, intend to enhance and expand cooperative efforts



in public health and medical sciences according to the following general principles:

All activities are to be conducted on the basis of equality, reciprocity and mutual benefits.

The cooperation provided for in this Memorandum does not affect relations currently established between institutions or individual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A-LAND. Rather, the Participants intend to attempt to identify new areas for joint activities and to avoid unnecessary duplication.

## II

The Participants plan to provide for an expansion of cooperation across a broad range of mutual interests. Initial efforts are to be directed at developing joint activities addressing their common problems in the areas of:

- Laboratory science and research;
- Control of communicable diseases;
- Public health training programs;
- Emerging and re-emerging infectious diseases;
- Immunization and vaccine safety;
- Bioterrorism;
- Vaccine clinical trial;
- Quarantine;

- Imported diseases;
- Chronic diseases; and
- Epidemiologic investigation and surveillance.

### III

The methods of cooperation provided for in this Memorandum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 Assigning focal points for public health emergencies such as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animal-related diseases, and bioterrorism;
- Deployment of experts to share information on the epidemic investigation and consultation for public health emergencies;
- Coordinated scientific programs and research projects;
- Establishment of a joint working group concerning emerging public health problems and bioterrorism;
- Exchanges and training of scientists and delegations;
- Information and technology sharing in support of activities of mutual interest; and
- Meetings and scientific conferences.

The Participants also intend to encourage and facilitate the establishment of direct relationships between other appropriate individuals in the two institutes.

#### IV

For each area of cooperation, and initially for those areas identified in Article II, the Participants or their designees intend to identify an appropriate entity to take the lead in overseeing the practical implementation of activities. The appropriate entities of the two parties should be responsible for coordinating communications and activities with their counterparts and should be responsible for fulfilling mutually decided responsibilities.

#### V

All activities undertaken pursuant to this Memorandum are to b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both countries and are subject to the availability of personnel, resources, and appropriate funds. Steps for implementing this Memorandum are to be developed through mutual consultations based on mutual priorities following signature of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 VI

Activities under this Memorandum commence upon signature by both Participants for a period of five years. This Memorandum may be amended or extended by the ~~mutual-agreement~~ joint decision of the Participants.

-~~DONE~~ Signed at Seoul, in ~~triplicate~~ duplicate, on this seventh day of May 2007, in the Korean, ~~○○○~~ and English languages.

FOR THE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FOR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ON BEHALF OF THE MINISTRY OF <del>△△△</del> OF THE REPUBLIC OF KOREA:	ON BEHALF OF THE MINISTRY OF <del>△△△</del> OF THE A-LAND

## 8. 지방자치단체 간 개발협력 약정안

- 상기 약정안은 우리나라 △△△시가 국내법령(특히, ‘△△△시 국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상 그 소관업무 및 권한 범위 내에서 A-LAND ○○○시 홍강 유역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A-LAND ○○○시와 체결하는 기관간 약정.
- 동 약정안은 “협정(Agreement)”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협정(Agreement)”은 비정치적이고 전문적·기술적인 내용의 국가(정부)간 조약에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이므로, “약정(Arrangement)” 또는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동 약정안 제4항 2(b)에 따르면, ○○○시측이 ‘한·A-LAND 무상원조 및 기술협력 협정’ 제6조에 따른 특권과 면제, 혜택을 프로젝트팀원 및 그 가족에게 부여토록 하고 있으나, 입출국 및 체류의 허가, 외국인 등록절차의 편의 제공 및 영사수수료의 면제 및 면세 등은 주권제약사항으로서 ○○○시 인민위원회가 아닌 중앙정부의 소관사항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 6조에 따른 특권, 면제 및 혜택 중 ○○○시 측이 제공할 수 있는 사항을 확인한 후, 이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
- 또한 동 약정안 제6항의 3에 따르면, 동 약정과 관련된 분쟁을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하지 못할 경우 ‘한·A-LAND 투자보장 협정’의 분쟁 해결절차에 따라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협정 제8, 9조는 각각 일방 체약당사국과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 간의 분쟁 및 체약당사국 간 분쟁 해결을 규정하고 있어 △△△시와 ○○○시 간의 분쟁을 상정한 동 제4항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이를 삭제
  - 중재(arbitration) 등 투자보장 협정상 분쟁해결 절차 준용이 필요한 경

우에는 투자보장협정을 인용할 필요 없이 중재절차를 명시적으로 서술

- 서명 일시 및 장소, 언어본 관련 문안을 서명란 위에 추가
- 첨부 : 검토 수정안

**Agreement Arrangement on Cooperation  
for the Development of ○○○'s Hong River  
between  
the △△△ Metropolitan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 People's Committee of the A-LAND  
~~for the Development of ○○○'s Hong River.~~**

The △△△ Metropolitan Government (SMG)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 People's Committee (HPC) of the A-LAND(hereinafter "the Sides")

Affirming the continuing friendly and cooperative bilateral relations based on sisterhood and ~~in the belief~~believing that b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will further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two cities and promote friendship, ~~the △△△ Metropolitan Government (SMG) of Korea and ○○○ People's Committee (HPC) of A-LAND (hereinafter "the parties")~~ agree to the followings,;

~~in recognition of~~Considering the "Terms of Reference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Basic Plan for the Development of ○○○'s Hong River Area," as discussed and signed on April 7, 2006, between the Hong River Development Support Bureau of the SMG and Department for Urban Planning and Architecture of the HPC, the working-level authorities of both cities; and

~~based on~~On the basis of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on Cooperation on ○○○’s Hong River Area Development between the SMG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HPC of the A-LA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OU”),” signed on September 29, 2005;

Have reached the following arrangement:-

**Article Paragraph 1 (←  
Purpose)**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Arrangement is to seek ~~matters necessary to~~ establish a Basic Plan for the development of the Hong River, which flows through ○○○, the A-LAND and ~~on its basis, and~~ effectively execute the Hong River Development Project.;

**Paragraph Article 2 (←  
Definitions)**

- (a) “Basic Plan for the Development of the Hong Riv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sic Plan”) ~~refers meansto~~ the Basic Plan for improving and developing areas along a forty kilometer stretch of ○○○’s Hong River between the left and right dikes (including two dikes and their protecting corridors);  
2)(b) “Hong River Development Project” means the development project which will be established, ~~approval~~ approved and



executed based on the aforementioned ~~the~~ Basic Plan.

3)(c) “Task Force Team” means the government organization led by government officials of the SMG and HPC;

4)(d) “Project Team” means the Korean engineering company consisting of experts selected by the SMG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Basic Plan; and

5)(e) “TOR” ~~refers~~ means ~~to~~ the “Terms of Reference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Basic Plan for the Development of ○○○’s Hong River Area” as discussed and signed between the Hong River Development Support Bureau of the SMG and the Department for Urban Planning and Architecture of the HPC.

### Paragraph Article 3

#### ~~(Key cooperation~~Cooperative Activities)

1. Costs related to ~~establishing~~ the establishment of the Basic Plan ~~are~~ will not exceed the equivalent of ~~approximately~~ five million US dollars (US\$ 5,000,000)~~\$5 million~~, ~~in the process of bidding to select the project team in the future~~. The costs ~~shall~~ will be shared by the SMG and the HPC with at ratio of nine to one. Cost-sharing arrangements ~~shall~~ will be concluded in compliance with the TOR.

2. In the execution of the Hong River Development Project,

based on the Basic Plan established through this AgreementArrangement, preferential participation of Korean and A-LAND companies ~~shall~~ will be securedendured. Specific ways to ~~secure~~ ensure the participation of Korean and A-LAND companies ~~shall~~ will be discussed, ~~among~~ considering various options such as “priority participation rights in new town development,” “additional points in bids” and “preferential participation in a certain portion of orders for the Hong River improvement.”

3. In respect of any matters not specified in this ~~agreementArrangement~~, the ~~partiesSides~~ ~~shall~~ will make all good faith efforts to ~~achieve~~ carry out this AgreementArrangement in accordance with the spirit and intent of the “MOU” and “TOR”, which are inseparable parts of this AgreementArrangement and provide all necessary support to the other ~~partySide~~.

**ParagraphArticle 4 (–  
Responsibilities of the ~~partiesSides~~)**

1.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the Basic Plan at the request of the HPC, the SMG ~~shall~~ will be responsible for the following, in compliance with Korean laws and regulations. :

- 1)(a) ~~Assign~~ assigning and dispatching the Project Team of ~~experts~~ to establish the Basic Plan for the development of the Hong River.;

- ~~3)~~(b) ~~Support~~ supporting the Project Team to hire local consultants and engineering staffs in cooperation with the ○○○ Task Force Team; and
- ~~5)~~(c) ~~Establish~~ establishing the Basic Plan and submitting it to the HPC.

2. ~~In compliance with Vietnamese laws and regulations,~~ The HPC ~~shall~~ will be responsible for the following to ensure the successful execution of the project ~~execution,~~ in compliance with A-LAND laws and regulations: -

- ~~(a)~~1) ~~Provide~~ing available data and materials to the Project Team upon request with respect to matters ~~agreed~~ jointly decided upon between the ~~parties~~ Sides or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the Basic Plan; and
- ~~2)~~(b) ~~Fully~~ fully according the Project Team experts and their families ~~the~~ privileges, exemptions, benefits and permits that are no less favorable than those accorded to experts and their families of any third countries performing ~~a~~ similar missions in the A-LAND as stipulated [in “Article ~~6~~ VI of the Agreement on Grant Aids and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A-LAND” signed on April 16, 2005 and] the “TOR”; and
- (c) ~~3)~~ Execute the Hong River Development Project based on the Basic Plan, once it is established and approved by the competent state Agency or unit.

**Paragraph Article 5 (**  
**Executing Authorities)**

1. (a) In order to ~~assure~~ ensure an optimal environment for the efficient execution of this ~~Agreement~~Arrangement, the ~~parties~~Sides ~~shall~~ will establish executing authorities in both cities to initiate cooperative projects related to the Hong River development,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the Basic Plan.
  - 1) (b) The responsible authority of the SMG ~~shall~~ will be the Hong River Development Support Bureau (or its successors), which is a Task Force Team.
  - 2) (c) The responsible authority of the HPC ~~shall~~ will be ~~The~~ the Department for Urban Planning and Architecture (or its successors).
  
2. In order to smoothly execute the establishment of the Hong River Development Plan and the development activities, ~~if necessary~~ the ~~parties~~ Sides ~~shall~~ will, if necessary, encourage the signing of ~~Supplementary agreements~~ Arrangements for cooperative activities between institutions, research centers, universities and other related organizations of both cities to the extent allowed by this ~~Agreement~~Arrangement. Such ~~agreements~~ Arrangements ~~shall~~ will be in compli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in force in both cities.

**Paragraph Article 6 (**  
**Settlement of Disputes)**

1. The ~~part~~Sides ~~shall~~ will mutually cooperate and promptly act upon any issues arising from or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Arrangement.

~~3.2.~~ All disputes arising out of the interpretation or execution of this ~~Agre~~arrangement ~~shall~~ will be settled in a friendly and timely manner through discussions and negotiations or any other methods ~~mutually~~ as jointly decided.

~~3.~~ Any claims, demands or actions arising out of or relating to this agreement, unresolved through mutual consultations, shall be settled under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specified in th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A=LAND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Paragraph Article 7 (**  
**Entry into Effect, Amendment and Termination of the Arrangement)**

1. This ~~Agre~~arrangement ~~shall~~ will become effective upon the its signatures ~~of~~ by the Mayor of the SMG and the Chairman of the HPC ~~of both parties.~~

~~3.2. This Arrangement shall will be in remain effect until the Hong River Development Project is completed following the establishment of the Basic Plan.~~

~~4.3. Except as expressly stated to the contrary herein, this Agreement Arrangement may be amended or cancelled terminated in whole or in part by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Sides. In case of force majeure, either party Side may cancel terminate this Agreement Arrangement upon written notice to the other, such termination taking effect ( ) months after the notice.~~

~~4. If either party Side fails or ceases to establish the Basic Plan or execute the Hong River Development Project with nowithout reasonable cause, which is against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built on mutual trust in cooperative project, the other partySide shall may terminate this Arrangement and request for reimbursement of the amount already spent.~~

~~The Mayor of SMG and Chairman of HPC hereby confirm the above and sign this Agreement on April XX, 2006 Signed in duplicate, at , on this day of , 2007, in the Korean, A-LAND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valid.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will prevail be used.~~

On behalf of For the △△△  
Metropolitan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Mayor—

◎ ◎ ◎

On behalf of For the ○○○  
Committee  
of the A-LAND

Chairman—

◎ ◎ ◎

## 알기쉬운 기관간 약정 업무<비매품>

펴낸날	2007년 10월 15일
펴낸곳	외교통상부 조약국 조약과 (110-05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37
연락처	02-2100-7507/15
담당자	황선옥 사서사무관
인쇄처	필코문화사(☎ 02-2269-2466)

- ※ 이 책에 수록된 기관간 약정 관련 내용은 공식적인 지침이 아니며 실무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작성된 참고자료입니다
- ※ 누구든지 비영리적인 용도를 위하여 이 책의 내용을 인용, 복제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개작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AGENCY TO AGENCY ARRANGEMENT



외교통상부 조약국

[www.mofat.go.kr/2100-7507~10](http://www.mofat.go.kr/2100-7507~10)